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10호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189호(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3
- 인천광역시훈령 제1190호(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27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68호(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광로3류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44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40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04호(압류자동차 공매 공시송달 공고) .....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06호(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4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08호(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09호(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공고) ..... 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18호(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 ..... 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22호(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5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29호(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 ..... 7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35호(「2018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행사주관사 모집 공고) ..... 8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36호(도시계획시설(새별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9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39호(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 10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40호(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10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44호(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 10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8-189호(도로지정 공고) ..... 107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90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08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94호(손실보상계획공고) ..... 111
-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8-15호(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표) ..... 117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251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118

회 람								
--------	--	--	--	--	--	--	--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18-103호(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2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104호(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63호(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64호(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66호(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3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252호(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68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253호(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86

**군 · 구**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8-1307호(공인 신조 공고) ..... 209

**기 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 제2018-1호(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 210

##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발령)

제 명 :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개정이유

2018. 7. 2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조~제3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조~제6조)
-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접수절차,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7조~제14조)
- 공익신고의 조사·이송·종결,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5조~제18조)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9조~제29조)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8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189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및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관실에서 설치하며, 각 업무 소관 부서에도 공익신고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이하 “공익신고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하고, 공익신고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담당관(이하 “공익신고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보호·보상제도 안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부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의 철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철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담당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가 철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4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 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9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1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감면)** ① 시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4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시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8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과전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제29조(협조 등의 요청)**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센터장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송부·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 [별지 제7호서식]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 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 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8호서식]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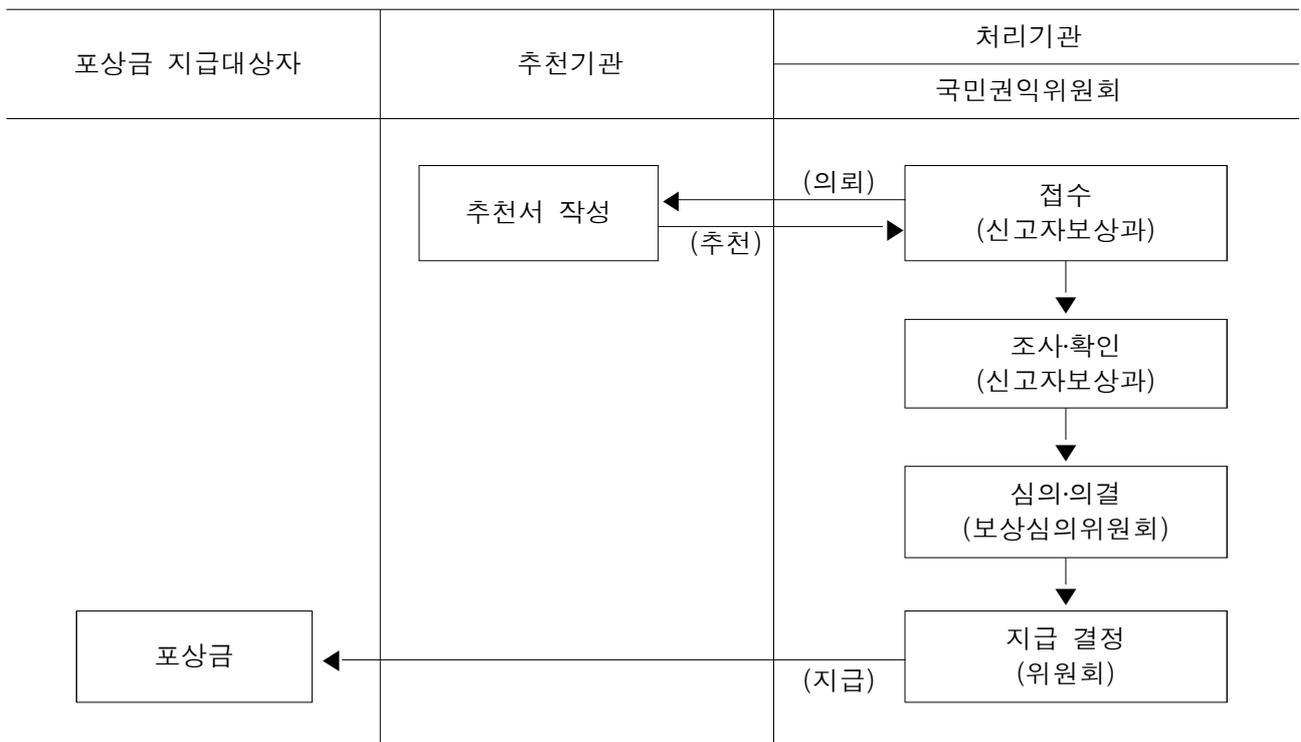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인천광역시훈령(발령)

제 명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정이유

인사운영의 법제화를 통한 인사의 예측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인사관리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기 전보시기를 1월과 7월로 정함(제5조)
- 전보대상, 전보제한 등 전보기준을 정함(제6조)
- 근무희망 소방관서로의 전보근거를 정함(제7조)
- 전보제외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제8조)
- 소방본부로의 전입기준을 정함(제9조)
- 보직관리 원칙 및 순환보직 기준을 정함(제10조)
- 소방학교 전임교수 등의 공모선발 근거를 정함(제11조)
-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 및 운영 등을 정함(제12조)
- 공로연수 대상의 범위를 정함(제13조)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낚    춘

2018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훈령 제 1190 호

###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란 시장 및 시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방서장, 소방학교장을 말한다.
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및 소방학교를 말한다.
3. “부서”란 소방관서의 각 과(단, 관, 실을 포함한다) 및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및 소방정대를 말한다.
4. “원거리 소방관서”란 강화소방서 및 영종소방서를 말한다.
5. “외근부서”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외근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내근부서”란 외근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
7. “현장지휘관”이란 외근부서의 장(소방서의 현장지휘팀장을 포함하되, 구급대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사운영 원칙) ① 임용권자는 소방관서의 성과 극대화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투명·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 청탁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성과상여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전보시기) ① 정기 전보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1월, 7월) 실시한다. 다만, 소방여건과 승진심사 시기를 고려하여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시 전보는 퇴직,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거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전보기준) ① 전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 소방관서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다만, 인사운영 여건과 전보시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전보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고,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전보할 수 있다.

가. 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전보가 가능한 근무기간

나. 지방소방령: 2년. 다만,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지방소방령은 4년으로 한다.

다. 지방소방경: 3년. 다만,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지방소방경은 5년으로 한다.

라. 지방소방위 이하: 5년. 다만, 원거리 소방관서 및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7년으로 한다.

2. 승진자

3.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인사고충자

4.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

5. 상·하 동료 간 및 민원관계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관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방소방경 이상의 사람인 경우에는 전보 시 직전에 근무하였던 소방관서로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인사고충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보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후 최초 전보된 소방관서에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은 전보할 수 없다.

⑤ 지방소방위 이하 승진자의 경우 승진 당시 소방관서에서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방공무원을 전보하는 것이 소방관서별 정원, 직급, 보직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근무희망 전보) ① 임용권자는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희망 소방관서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방위 이하의 원거리 소방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희망 소방관서에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전보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 다만, 소방관서장은 제외한다.
2.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의 특수직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제9조(소방본부 전입기준 등) ① 소방본부 전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한 사람
2. 지방소방령: 현 계급 승진임용일부터 6년 미만인 사람
3. 지방소방경: 현 계급 승진임용일부터 4년 미만이고, 현장지휘관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지방소방위 이하 : 현 계급 승진임용일부터 3년 미만인 사람

②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소방본부 전입신청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소방본부 전입 시에는 별지서식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본부장이 선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로의 전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위 연루, 사생활 문란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임용권자는 인사의 시기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직관리 원칙) ① 소방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 및 개인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보직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순환보직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세부기준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 관리대상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회계, 민원부서로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전임교수 등 공모) ① 직무전문능력 강화와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방학교 전임교수 등을 사전 공모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전임교수 등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방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고충심사) ① 「소방공무원법」 제22조 및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3조의3 규정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대상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보수, 근무시간, 업무량, 근무환경 등에 관한 사항
2. 승진,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상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3.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과에 관한 사항
4. 성별, 연령별 및 종교별 구분 등에 관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5. 기타 개인의 정신(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2조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충심사의 청구, 접수, 결정서 등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제13조(공로연수) 공로연수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사람을 선정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별표]

순환보직 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직 급	순 환 보 직 기 준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경은 당해 계급에서 경험한 직무 외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지방소방위 이하는 내근과 외근에서의 근무비율 및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li> <li>3. 내근부서 인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근부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 보직한다.</li> </ol>
지방소방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진 임용된 사람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본부에 우선 보직한다.</li> </ol>
지방소방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장의 보직은 3회 이상 동일 직위에 연속하여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li> </ol>
지방소방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소방경으로 승진 임용된 사람 및 당해 계급에서 내근부서 경력만 있는 사람은 소방서의 현장지휘팀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정대장 등 현장지휘관에 우선 보직한다.</li> </ol>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계급(소방서 간 전보를 포함한다.)에서 내근부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하며, 외근부서에 보직 시 최소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및 질병·부상·임신 등으로 외근부서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지방소방사는 임용일로부터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119 지역대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자는 배치 할 수 있다.</li> </ol>

[별지서식]

소방본부 전입신청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관서 (부서)	현 계 급 (임용일)	채용구분 (채용분야/ 최초임용)
	( )	( )	( )	( / )
거 주 지				
담당업무			희망부서	
현관서배치일			희망보직	
직무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발급기관	비 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	
주요 경력	근 무 기 간	부서명	주요업무 실적	
	<i>현장지휘부서근무경력</i>	<i>기재 필수</i>		
포상 · 징계	포상 훈격 (포상일)		불문경고 이상 징계양정 (징계일)	
전입 이후 포부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6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류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류7호선, 사업명: 신월초등학교 육교옆길 보행로 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11.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17-3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7	40~42	주간선 도로	9,450	대로2-14 (용현동)	운연동 (시흥시계)	일반 도로		건고 제160호 (1976.07.08)	
변경	광로	3	7	40~42.5	주간선 도로	9,450 (82)	대로2-14 (구월동 617-3)	운연동 (구월동 618-1)	일반 도로			보도구간 폭원확장

※ 연장 (82m)는 금회 시행할 보도의 폭원확장 구간임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류7호선	광로 3류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구간 폭원확장 연장(L)=82m</li> <li>폭원(B) = 40m → 42.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교로 인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부구간의 보도 폭원 확장</li> </ul>

##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3류7호선)

【명칭】 신월초등학교 육교옆길 보행로 확장공사

## 5.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면적】 A=595㎡(기존 도로시설 면적 포함)

【규모】 전체 연장(L)=9,450m 중 금회 연장(L)=82m의 보도 구간 중  
보도(B)=5m→7.5m 폭원 확장(2.5m)

## 6.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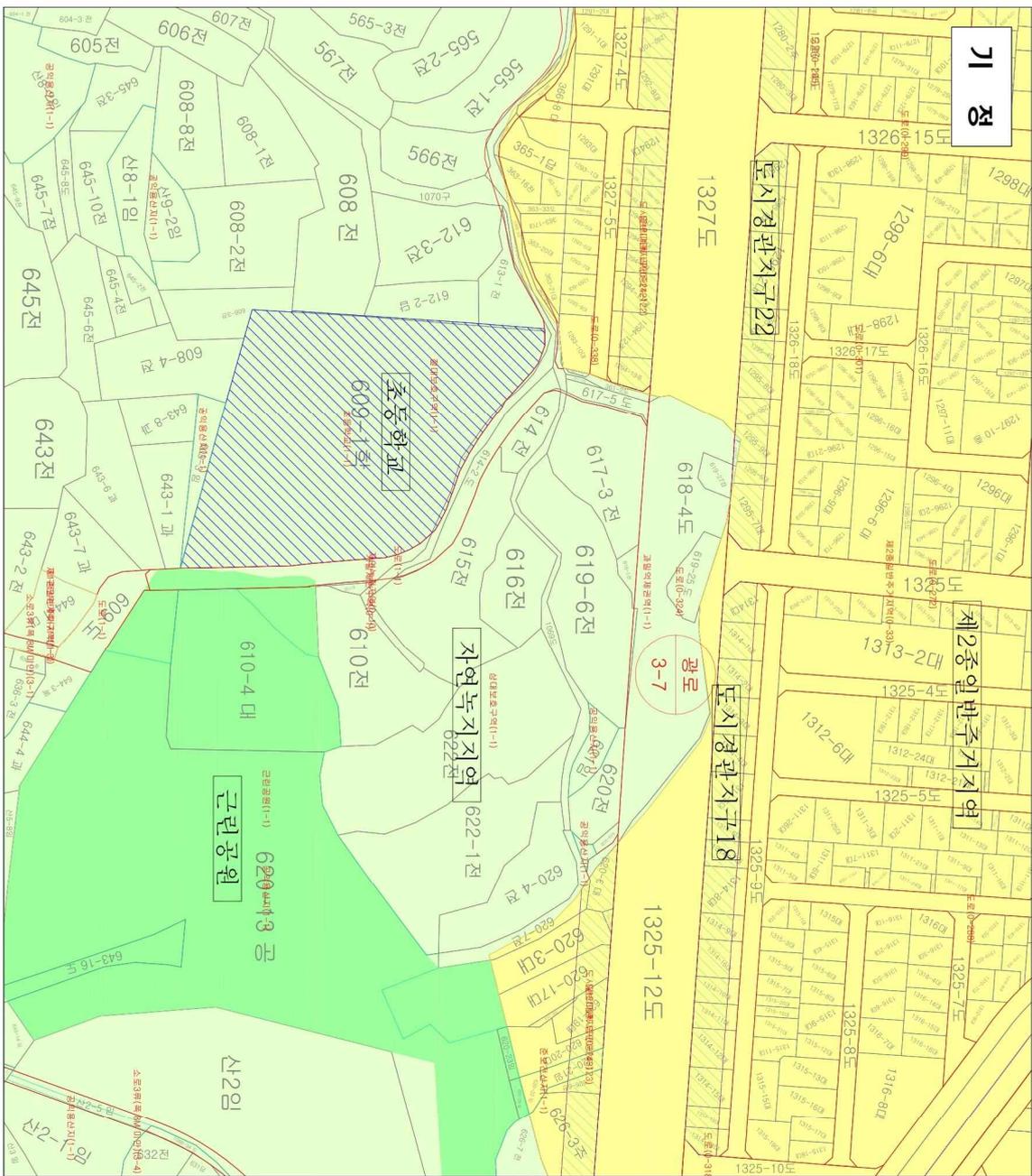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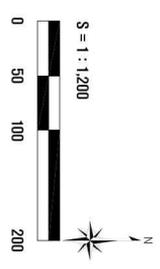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신월초등학교 육교옆길 보행로 확장공사” 와 관련된 일체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7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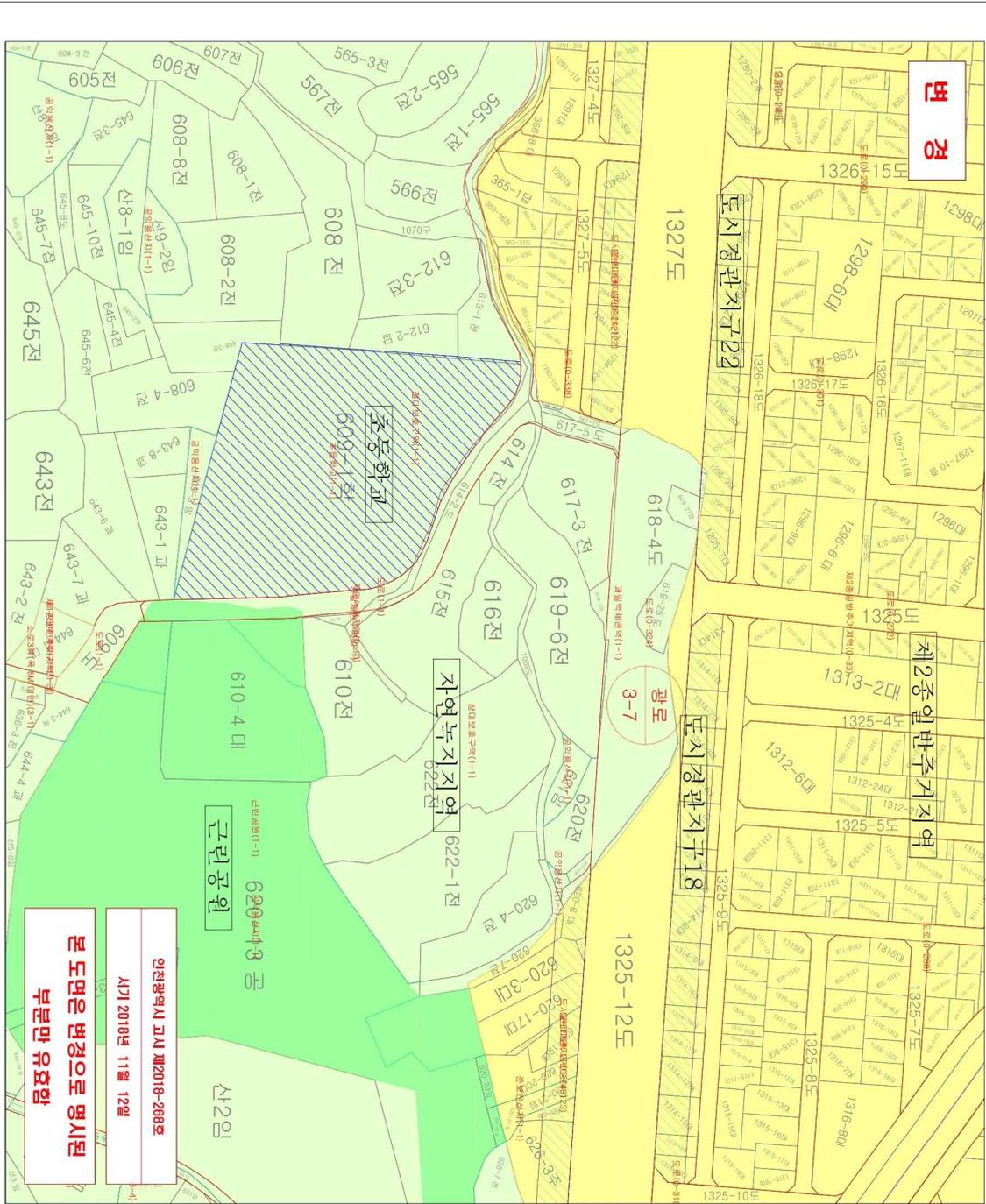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시계획시설도면 결정(변경)도 -

**범 례**

- 일반 광역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 녹지 지역
- 대 로 이 상
- 종 로 이 하
- 원 중 녹 지
- 근 립 공 원
- 이 립 이 공 원
- 일반 경관 지구
- 기타 도시계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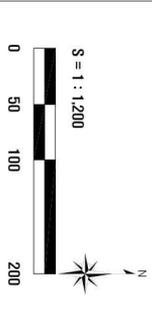
**본 도면은 변경으로 명시된  
부분만 유효함**

연천광역시 도시 제2018-208호  
시기 2018년 11월 12일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50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지도**  
- 도시계획시범(도로) 결정(변경)도 -

**범 례**

	일반 공업 지역		일반 및 계획원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1차원지
	자연 녹지 지역		2차원지
	대 로 이 상		연천광역시
	중 로 이 하		연천광역시
	관 중 녹 지		도시시업담당
	근 름 공 원		도원분야
	어 림 이 공 원		지형시업주최
	일반 경 관 지 구		시정시무반
	기타 도시계획시행		이월주
			책임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44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39호(2018. 9. 27.)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 변경사유

- 개발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및 주소지 변경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자 및 주소지 변경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변경)

구분	성명 및 주소	비고
기정	· 인천광역시(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대표자: 노형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국제업무단지
변경	· 인천광역시(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대표자: 신문식)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국제업무단지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따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4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1.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제2018-1428호)
2. 공고기간 : 2018년 11월 5일 ~ 2018년 11월 19일까지(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 공매담당  
(☎ 032-440-8444)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한국수중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신흥동2가)	인천80더5926	수취인불명	
2	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호 (주안동)	87나3738	보관기간경과 반송	
3	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 801호 (효성동, 뉴서울3차아파트)	86보5534	수취인불명	
4	선**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부리안***** (운연동)	83고1566	수취인불명	
5	(**에스씨제이지엘 에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 (창신동)	80가5342	수취인불명	
6	양**(50%), 양군자(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9***** 7동 지1호 (만수동, 청실빌라)	70저6641	보관기간경과	
7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6-9 (주안동)	70라7045	보관기간경과 반송	
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5, 803호 (중리동)	69오8676	보관기간경과	
9	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 2**호 (주안동, 알바트로스)	67조2217	보관기간경과 반송	
10	전**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7*****02호 (검암동, 동양아트빌)	66머2492	폐문부재	
11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시대아파트)	62두6586	주소불명	
12	(**누보산업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 1동 2**호 (오류동)	57러3371	수취인불명	
13	최**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1*****1, 5동 3**호 (부개동, 일신빌라)	55우1677	폐문부재	
14	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 1동 3**호 (용현동, 성신아파트)	52주8820	보관기간경과 반송	
15	양**	경상북도 경주시 탈해로47*****, 101호 (동천동)	52머3512	보관경과	
16	엄**, 김정미	경기도 김포시 대곶남로 3*****	52러7198	수취인불명	
17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1**동 905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1단지아파트)	51다5786	보관기간경과	
18	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148-**, E동 2호 (사리현동)	50라7107	폐문부재	
19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층 (고잔동)	50누6573	수취인불명	
20	황**(황영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6*****2동 1***호 (송도동, 송도 성지리벨루스)	42모5136	폐문부재	

연번	성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21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2동 1502호 (도림동, 도림주공그린빌1단지아파트)	37서2955	보관기간경과	
22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동 1004호 (논현동, 넷마을신영지웰아파트)	36루9927	보관기간경과	
23	안**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개로 ***** (옥계동)	31너5727	폐문부재	
24	정**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3동 202호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28도2309	폐문부재	
25	이**, 이진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 904호 (부개동, 부개주공아파트(6단지))	26더4927	폐문부재	
26	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1 (학익동)	26구5357	보관기간경과 반송	
27	이**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6*****공단36블럭 6롯데 (남촌동)	24무9033	수취인불명	
28	강**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 404호 (왕길동, 검단e편한세상아파트)	24가6946	폐문부재	
29	컴**스 유한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호 (십정동)	23도8681	폐문부재	
30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 (만수동, 승희빌라)	22거1559	보관기간경과	
31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24, F동 301호 (구월동, 우성아트빌라)	21고3826	보관기간경과	
32	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호 (부평동, 캐슬베리)	20버5710	폐문부재	
33	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 102호 (임학동, 조흥빌라)	20러5313	폐문부재	
34	애**이조경산업(주)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01-2호 (마전동)	18조7910	이사불명	
35	손**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70***** (화수동)	15서1731	폐문부재	
36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9*****A동 401호 (남촌동, 그레이스빌)	15마9676	보관기간경과	
37	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동 1302호 (삼산동, 삼산타운주공아파트)	13더9384	폐문부재	
38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8*****102호 (연수동)	07조8424	수취인불명	
39	(**태광라이프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30***** (광적면)	06보2235	수취인불명	
40	(**동우이엔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동)	06마3019	주소불명	

연번	성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41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19, 3동 302호 (용현동, 성신빌라)	01저8811	보관기간경과반송	
42	김**, 심재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1***** 2동 B02호 (산곡동)	01너4566	수취인불명	
43	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1 (학익동)	인천35마4566	보관기간경과반송	
44	주**사 삼천리운송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 301호 (검암동)	인천06마4065	수취인불명	
45	(**삼천리운송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 301호 (검암동)	인천06마4021	수취인불명	
46	주**사 수리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914호 (목동,현대드림타워)	서울74바2332	수취인불명	
47	공**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동)	서울34고1188	보관기간경과	
48	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 1401호(부평동, 부평동아아파트)	56루8192	폐문부재	
49	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201호 (효성동, 한미빌라)	52더4774	주소불명	
50	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 101호 (당하동, 당하1차 풍림아이원아파트)	49오3813	폐문부재	
51	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동 103호 (도화동, 신태양아파트)	48마1946	보관기간경과반송	
52	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하점면)	25러9654	폐문부재	
53	최**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34*****02호(합정동)	12너9059	폐문부재	
54	박**	인천광역시 동구 쌍우물로9*****01호 (화수동)	07러8775	폐문부재	
55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403호 (송의동, 프라임시티)	05서7522	보관기간경과반송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1506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1월 5일

## 인 천 광 역 시 장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푸르메종합건설(주) (민 경 호)	2018. 11. 05.	인천 1600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30번길 9 (용현동, 더존빌)	사업 종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08호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2.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명칭: (주)수도권환경, 동아공사(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84,102㎡ [(주)수도권환경: 60,884㎡ / 동아공사: 23,218㎡]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 성 명: 대표이사 차석구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 동아공사주식회사
  - 성 명: 대표이사 박종기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0.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1	백석동	212-2	잡	32,657	32,657	32,657.0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	백석동	212-8	도	8,912	63	63.0	국유지(인천광역시)				
3	백석동	212-18	유	422	422	422.0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	백석동	212-19	유	4,419	4,419	4,419.0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5	백석동	212-20	잡	14,933	14,933	14,933.0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국민은행	근저당	
6	백석동	212-21	잡	8,291	8,291	8,291.0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7	백석동	212-24	잡	8,990	8,990	8,990.0	동아공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8	백석동	212-37	잡	6,917	6,917	6,917.0	동아공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9	백석동	212-161	잡	637	637	637.0	동아공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0	백석동	212-162	유	206	206	103.0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03.0	동아공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11	백석동	212-163	잡	4,906	4,906	4,906.0	동아공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2	백석동	212-211	유	69	69	69.0	동아공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3	백석동	212-212	잡	1,553	1,553	1,553.0	동아공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14	백석동	212-223	구	39	39	27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2	동아공사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4			
계				92,951	84,102	84,102.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5, 연수구 갯벌로 12)

○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84, 서구 서곶로 307)

10. 관계서류: 거제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됨).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09호

##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 인천광역시장

도로의 종류	광역시도	노 선 명	대2-1, 대2-109 (염전로) 대2-3 (송림로) 대2-32 (장고개로) 대 3-1 (석정로)
공사 종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및 주소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공사 목적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통한 사업 지구의 접근성 확보,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및 교통성 향상 도모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남구 도화동 981-1 ~ 264(염전로 L=1,048m) 남구 도화동 252 ~ 252(송림로 L=422m) 남구 도화동 264 ~ 255(장고개로 L=621m) 남구 도화동 255 ~ 271(석정로L=697m)		
착 수 일	2014년 12월 1일	준공예정일	2018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18호

##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같은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번호	검사업무 범위	지 정 일
한국지엠 서인천서비스 센터(주)	황인복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5-42(석남동)	종합2018-07호	○ 차량총중량 5.5톤이하의 종합검사 ○ 모든 자동차의 정기검사	2018.11.6
			사용2018-06호	○ 택시미터사용검정	

○ 연락 및 문의전화 : 교통관리과 담당자 유연식 (032)440-39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22호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과태료 납부고지 대상자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 액	발송주소
1	45로4315	(주***** **	2018-08-1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 (청천동)
2	37고8577	신*희	2018-08-1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3	46두2346	김*진	2018-08-1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번길 ** , ***동 ***호(주안동, 한신희플러스아파트)
4	71호6216	이*우	2018-08-19	6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 (연수동,문남마을아파트) ***-***
5	52소5238	이*석	2018-08-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번길 ** *층(주안동)
6	인천80배10 49	손*섭	2018-08-19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 , **동 ***호(송월동*가, 송월아파트)
7	43무8190	김*영	2018-08-19	5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 , ***동 ****호(능동, 동탄푸른마을 포스코더??아파트)
8	47주8036	김*희	2018-08-19	50,000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 , **동 ***호(괴안동, 역곡조공*차아파트)
9	04루5345	오*성	2018-08-19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번길 **~* ***호(연수동)
10	37녀3274	(주****	2018-08-19	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 , *층(문래동*가, 세란병원)
11	02서5507	백*주	2018-08-1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동 ****호 (학익동, 대안파크타운)
12	03주6273	김*오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주안동)
13	54저5421	이*민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번길 * ***호(병방동)
14	71주1353	중국**** ***	2018-08-29	60,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 **층(다동, 동부다동빌딩)
15	38고6936	김*환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 ***동 ***호(산곡동, 우성아파트)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 액	발송주소
16	61너2284	김*면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간석동)
17	48수3304	조*국	2018-08-29	50,000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번길 **, ***호(원종동, 문화아파트)
18	53무1724	홍*빈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 ***동 ***호(삼산동, 삼산주공미래타운아파트)
19	50거5093	김*배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번길 *-*, ***호(연수동)
20	38도0631	양*덕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번길 ***-**동 ***호(도화동, 롯데맨션)
21	59마5763	김*해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나동 ***호(주안동, 남가빌라)
22	86라6218	한*호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념이길 ***-**, *동 ***호(용현동, 성도아파트)
23	87나6029	서*수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동 ***호(문학동)
24	36두5530	이*정	2018-09-07	5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 ***동 ***호(망우동, 지앤지타운)
25	인천35러30 45	칠성**** *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가좌동)
26	69주8662	백*기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번길 *-*** (주안동)
27	95라0992	조*미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번길 **, ***호(운서동, **에클라트)
28	28수7964	이*숙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동 ***호(구월동, 희망아파트)
29	05구2247	김*권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동 ****호(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30	80거4109	코람**** ***	2018-09-07	5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길 **, *** (초지동)
31	79너9311	박*학	2018-09-07	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호(십정동)
32	86고1993	노*자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 ***호(청학동, 대한빌라)
33	92무5139	구*헌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로 **, ***동 ****호(신현동, 대성베르힐)
34	18너1655	김*희	2018-09-07	50,000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번길 **, ***동 ***호(거모동, 동보아파트)
35	26다3361	이*영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번길 *** ***동 ***호(십정동, 아트빌리지)
36	14거7952	성*현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번길 **, ***호(석남동, 신광아파트)
37	03고8174	이*미	2018-09-14	5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능동, 동탄능동마을 상록예가아파트)
38	82오1630	배*식	2018-09-14	50,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번길 ***-**, ***호(신곡동, 성광주택)
39	13마6127	최*환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동 ***호(관교동, 삼환아파트)
40	59주0540	박*규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 (부평동)
41	92보8061	황*호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번길 * ***호(선학동, 비둘기마을)
42	27러4518	이*곤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밭로**번길 *, 지층호(연수동)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43	56머7341	이*정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44	88어7096	박*택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번길 **, ***호(신현동)
45	73구7094	신*형	2018-08-20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 나동 ***호(구월동, 현광아파트)
46	88나3438	이*영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번길 * *, *층(주안동)
47	03부7267	송*환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 ***호(부개동, 광일아파트)
48	50서2900	WA***** ****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번길 **, ***호(사동)
49	57도6816	김*배	2018-08-20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번길 **, ***호(원미동, 부성연립)
50	25너4883	김*자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번길 **-* ***호 (율목동, 태성아트빌라)
51	14구7448	서*성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52	02로6290	박*숙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 동아탑월드(아) ****(승의동)
53	62루0758	이*재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 ***동 ***호(경서동, 태평상베르아파트)
54	25머4538	정*자	2018-08-29	50,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 ***동 ***호(자경마을중흥에스클래스)
55	41노3244	최*열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 ***동 ***호(구산동, 부평자이아파트)
56	20다9951	이*순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번길 *, *동 ***호(석남동, 효정아파트)
57	27너2969	박*복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 ***호 (부개동)
58	28버5942	김*선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번길 **, ***동 ***호(심곡동, 삼성아파트)
59	46로4320	김*영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번길 **, ***호 (산곡동, 서전빌라)
60	61다3332	김*민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십정동)
61	인천30바32 03	이*수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번길 **-* **, 다동 ***호(십정동, 삼인빌라)
62	62주0289	김*욱	2018-08-29	50,000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번길 *, *동 ***호(괴안동, 성진빌라)
63	03거6421	유*늘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번길 **-* **, ***호(부평동, 더플레이스뷰)
64	35나2961	이*원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호(간석동, 서호빌라)
65	36보7143	함*숙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동 ***호(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트)
66	28주3451	김*숙	2018-09-07	50,000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번길 * ***호 (철산동)
67	62노5637	엄*일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호(주안동, 예은주택)
68	06모9119	조*희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태이트아파트)
69	32어8878	이*영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번길 **-* *, *동 ***호(운북동, 공작빌라)
70	72누6141	안*이	2018-09-07	6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번길 **, ***동 ***호(가좌동, 한신타운하우스)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 액	발송주소
71	53다9846	윤*연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 ***동 ***호 (청천동, 효마을타운)
72	19버4417	천*화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번길 *-* , *층호(주안동)
73	48주4047	김*기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 , *동 ***호(만수동, 송원빌라)
74	20수5289	백*주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 *동 ***호(학익동, 동진아파트)
75	93서9123	김*수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제물량로***번길 ** (만석동)
76	64노4328	정*민	2018-09-07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 , ***동 ***호(신사동, 씨티아파트)
77	57도3395	안*희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 ***동 ****호(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아파트)
78	85고7944	박*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 지하층 ***호(남촌동, 정산빌라)
79	36소0264	정*섭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 *층(주안동)
80	95머6818	안*중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 ** , ***호(계산동, 청원빌리지)
81	28도2115	이*재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동 ***호 (주안동, 진흥아파트)
82	90두6437	임*용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번길 ** , ***동 ***호(병방동, 우정그린빌)
83	56도1998	박*삼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 ***호 (부평동, 투엠캐슬)
84	92러1008	김*연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 ***호(구월동, 굿모닝오피스텔)
85	68모0593	원*순	2018-08-20	50,000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 , ***동 ****호(명륜동, 명륜*단지아파트)
86	66하2673	강*민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호 (청라동, 영화블렌하임)
87	53저0358	양*선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 , ***동 ***호(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88	90서4988	김*환	2018-08-20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숭빛로**번길 ***-* (송림동)
89	27버1925	SA***** ***** ****	2018-08-20	50,000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 ***호
90	72도6980	김*남	2018-08-21	6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동 ***호 (가좌동, 대원빌라)
91	53무7123	김*권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 ***동 ***호(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트)
92	22루4145	황*수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 ***호(간석동, 팬더빌라)
93	48저9487	김*연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층(주안동)
94	85조6062	조*호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번길 * , ***호(부평동, 굿플러스)
95	19우9868	김*중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번길 * , 다동 ***호(가좌동, 상승빌리지)
96	인천84배10 68	조*휘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 (논현동, 소래휴먼시아)
97	인천83라22 03	백*석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호 (주안동, 성두빌라)
98	64구0392	강*식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 (십정동)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99	52머5249	임*연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부평동)
100	19서4176	이*규	2018-08-30	50,00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천수만으로 ***
101	88마6864	(주***** *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 디동(청라동)
102	19노1314	박*례	2018-08-30	50,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번길 **, ***동 ***호(송내동, 뉴서울아파트)
103	05오0884	우*호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번길 * , ***호(석남동)
104	83우2880	전*상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송의동, 동은히딩크빌)
105	08주7318	신*순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층(만수동)
106	43보7894	이*은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 *동 ***호(만수동, 성주다세대주택)
107	50마4002	정*자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 ***동 ****호(도화동)
108	01누2718	박*희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번길 ** (산곡동)
109	26무6799	남*영	2018-09-0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번길 **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110	18보4401	김*범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 ***동 ****호(간석동, 센트라움)
111	52도8527	정*호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대산빌라)
112	31코1796	강*수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 , *동 ***호(갈산동, 아주아파트)
113	31누4158	전*호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 ***호(구월동, 헤드림)
114	13주2422	김*태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 , ***동 ****호(중산동, 인천영종 하늘도시 한라비발디아파트)
115	14러3349	탁*순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번길 * ***호(장수동, 수현파크빌)
116	01보5002	김*섭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대로***번길 ** , ***호(주안동, 경동빌라)
117	인천82바51 34	윤*환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군봉길 ** , ***동 ***호(굴현동, 위너스빌)
118	08나1492	이*성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번길 **-** , ***호(부평동, 더스카이뷰)
119	11다7054	권혁**** *****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 ***호(주안동, 주안유스빌)
120	32오9719	진*영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21	40구7495	임*남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번길 ** , ***동 ****호(작전동, 뉴서울아파트)
122	18머3042	공*경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 ***동 ***호(논현동, 소래휴먼시아)
123	56조0324	이*영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 *-* , *동 ***호(문학동, 온누리타운)
124	89보5667	장*동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125	23부7435	황*정	2018-08-30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
126	71소7195	신*야	2018-08-30	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 , *동 ***호(십정동, 금모래팰리스)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127	36우8101	김*주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번길 **, ***호(연수동)
128	17모0832	홍*관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염로 **, *동 ***호(주안동, 우정아파트)
129	57부6988	최*호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쌍우물로**번길 **-* (화수동)
130	16모1435	진*운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 , ***호(석남동)
131	56라1539	이*숙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동 ***호(만수동, 삼보다세대주택)
132	24보3616	위*아	2018-08-3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호(만수동, 삼화다세대주택)
133	20모4640	채*서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동 ****호(가좌동, 진주아파트)
134	28머5348	박*석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번길 * , **동 ***호(좌천동, 대신아트빌라)
135	58조9141	안*심	2018-08-31	50,000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원당길 **-*
136	89노1803	이*준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만수동, 한샘다세대주택)
137	24어1907	최*락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동 ***호(도화동, 영동빌라)
138	92저3868	김*훈	2018-08-31	50,000	강원도 원주시 단구초교길 **, ***동 ***호(단구동, 대홍아파트)
139	34저3982	김*경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만수동, 휴먼테크빌)
140	86부8514	전*진	2018-09-0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번길 **, ***호(간석동, 광명아파트)
141	46다1277	오*규	2018-09-08	50,000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번길 **-* , ***호(소사본동, 주은체르빌)
142	49누8252	윤*호	2018-09-0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동 ***호(청라동, 청라**)
143	03더3595	한*연	2018-09-0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관교동, 신비마을아파트)
144	09거0838	김*주	2018-09-0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 , *동 ***호(십정동, 삼성홈타운)
145	38거1067	서*수	2018-09-08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 ***동 ****호(옥련동, 현대아파트)
146	16두8407	오*배	2018-09-0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동 ***호(학익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47	13구3230	정*	2018-09-0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 , ***동 ***호(가좌동, 송림빌라)
148	28로5428	권*숙	2018-09-0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번길 **, ***동 ***호(마전동, 마전*차풍림아이원아파트)
149	인천30바86 64	이*엽	2018-09-0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동 ***호(관교동, 쌍용아파트)
150	25라2025	박*춘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번길 **, **동 ***호(가좌동, 라이프빌라)
151	57서4231	유*애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번길 **, ***동 ****호(남촌동, 풍림아파트)
152	35거0894	이*찬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튜디오아파트)
153	13나6812	노*현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만수동, 중성다세대주택)
154	35러2235	이*재	2018-08-2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 다동 ***호(산곡동, 궁전빌리지)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 액	발송주소
155	52로6120	오*표	2018-08-21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길 *-** ***호(봉천동, 낙성빌라)
156	68너5817	이*준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송로**번길 ***호(도화동)
157	61너2284	김*면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호(간석동)
158	32무2827	신*식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159	43거0358	김*수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160	04무9161	이*용	2018-08-31	5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번길 **-* , ***동 ***호(권선동, 우남아파트)
161	인천30바55 52	이*용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화로 **, **동 ***호(선학동, 정광아파트)
162	81러9648	임*수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구월동, 신비주택*차)
163	45더2390	공*신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64	59무8181	가*숙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인아파트)
165	22라9335	서*진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동 ***호(부평동, 동아아파트)
166	62부4339	강*숙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호(부평동, 아미파크)
167	60버0518	정*숙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번길 ** ***동 ***호(남촌동, 풍림아파트)
168	26무3027	노*찬	2018-09-09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향동로**번길 **, ***동 ***호(일신동, 주공아파트)
169	인천32바17 38	원*일	2018-09-09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번길 ** , ***호(계산동, 교대오피스텔)
170	23가8174	송*용	2018-09-09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번길 **, ***동 ***호(청학동, 성호아파트)
171	08오4138	박*희	2018-09-09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번길 *-** *동 ***호(효성동, 보경아트빌라)
172	53무7718	이*재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호(구월동, 구월빌라)
173	07무0202	김*훈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 ***호(경서동, 휴먼파크빌)
174	36우2190	정*발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번길 * ***호(주안동)
175	33더7041	김*순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승의동, 다우림아파트)
176	38저3815	권*성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 , ***호(만수동, 해밀뜨락)
177	54조3645	양*석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향동로 **, ***호(일신동, 겐코비하우스)
178	35더6600	권*훈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호(간석동, 삼영베스트빌)
179	29저9187	지*희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동 ***호(남촌동, 풍림아파트)
180	02우0300	정*정	2018-08-22	50,000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번길 **, ***호(서정동)
181	20무4798	서*권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번길 ** *동 ***호(항동*가, 다흥탑스빌)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182	40버3816	정*진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쌍용투)
183	64우0345	최*진	2018-08-22	5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 (망원동)
184	64소0710	이*민	2018-08-22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호(신사동)
185	46루1614	라*우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송의동, 스카이스테이트)
186	23마7354	김*국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 ***호(주안동, 이즈)
187	56도6260	이*정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동 ***호(학익동, 현광아파트)
188	84어7946	이*재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주안동)
189	67버7937	문*열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번길 ***-**, ***동 ***호(청천동, 성웅산호타운)
190	05부0379	한*희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 가동 ***호(계산동, 영신주택)
191	15머9643	김*근	2018-08-31	50,000	강원도 춘천시 탁나무길*번길 **, ***호(효자동)
192	28어6423	윤수**** *****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193	37우5659	정*찬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번길 **-* , ***호(송의동, 해담아트빌 *차)
194	25주5566	이*동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 *동 ***호(산곡동, 씨밀레빌라)
195	인천32바12 75	김*훈	2018-08-31	2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번길 **-* (십정동)
196	86두6310	진*숙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이편한세상서창)
197	26수7962	우*명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 ***동 ***호(서창동, 태평아파트)
198	35더0502	(주*****	2018-08-31	5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 ***호(신갈동)
199	91조7850	노*성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주안동)
200	37소9824	주*술	2018-08-3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호(주안동, 미송아파트)
201	52머6862	김*경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층호(주안동)
202	61고9077	김*임	2018-09-10	5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나길 **, 지층**호(독산동)
203	90무8235	LI***** *****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서길 **-* , (선화동)
204	51무0475	강*현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205	57마0775	이*향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동 ***호(논현동, 소래휴먼시아)
206	60버6551	김*훈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호(원당동)
207	04수4548	성*현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 , *층(만수동)
208	25거9321	정*남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남로**번길 **-* (부평동)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209	73누8813	송*진	2018-09-10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 ***호(간석동, 청송빌라)
210	17소9025	안*정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 , *동 ***호(용현동, 한양아파트)
211	64다5061	전*정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 *동 ***호(주안동, 정석빌라)
212	75도8950	박*훈	2018-09-10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 *동 ***호(간석동, 신세계빌라)
213	28러8713	권*삼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214	46모6085	전*례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 ***호(간석동, 해마루빌리지)
215	13로3731	권*수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번길 * ***동 ***호 (작전동, 보석아트빌)
216	75조5600	안*자	2018-08-22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주안동)
217	06주7490	이*우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죽골로 **-* ***호 (도화동, 도화씨티빌)
218	61무8283	주*흠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219	81가9429	(주***** *)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번길 **-* , *층(만수동)
220	29머4638	김*규	2018-08-22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번길 **-* , ***호(역곡동, 이든하우스)
221	90누6585	주식***** ****	2018-08-22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식사동)
222	37오9177	장*현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진양다세대주택)
223	03다5795	구*회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 ***동 ***호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단지)
224	07누3473	심*섭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 *동 ***호(관교동, 동아아파트)
225	55더4367	김*초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번길 **-* ***호(가정동)
226	11나1027	박*준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동 ***호 (십정동, 광명빌라)
227	69가3957	김*용	2018-09-01	50,00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 , 나동 ***호
228	10거5302	이*동	2018-09-01	50,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번길 ** , ***동 ***호(정왕동, 영화아파트)
229	63더8810	고*익	2018-09-0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번길 ** , ***호(석남동, 무한레뷰빌)
230	94노2245	양*구	2018-09-0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번길 **-* , *동 ***호(옥련동, 동아오피스텔)
231	24부3890	권*제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번길 **-* (산곡동)
232	51더1502	김*순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 ***동 ***호(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233	02오0997	최*호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로 ** (화수동)
234	52더1848	조*영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번길 **-* (만석동)
235	29머1211	이재***** ****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 ***호(주안동, 도운베스트빌)
236	25나3740	최*현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번길 ** , ***호(용현동)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237	28구5584	이*건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동 ***호(송의동, 한아름아파트)
238	33머7220	김*성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동 ***호(송의동, 한아름아파트)
239	84거0415	성*환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주안동)
240	06소4137	황*용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호(간석동, 도담)
241	65더5751	권*민	2018-08-22	50,000	경기도 부천시 성지로**번길 **, 나동 *층 ***호(고강동, 월드빌라)
242	67모6868	송*호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번길 *~**, ***동 ***호(신흥동*가, 삼정베스트빌)
243	79모7934	최*철	2018-08-22	60,00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번길 *~*, ***호(화수동, 화도파크빌라)
244	40누3686	이*간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 ***동 ****호(만수동, 대성유니드별빛마을아파트)
245	16무5912	최*욱	2018-08-22	50,0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
246	02조8927	조*선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송의동, 다우립)
247	53우1882	김*원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번길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248	64주4114	한*순	2018-08-2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간석동, 명보원룸)
249	25가8662	임*희	2018-08-22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길 ** ***동 ****호(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
250	39서9517	남*우	2018-08-2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호(간석동)
251	14어6753	박*환	2018-09-0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동 ****호(송도동, 송도이안)
252	50누1105	김*명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동 ***호(도화동, 동원아파트)
253	08허1797	(주***** ****)	2018-09-03	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호(역삼동, 아남타워)
254	55서0274	김*수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층 ***호(주안동, 명성에이스빌)
255	92무8748	우*숙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동 ****호(도화동, 도화한승미메이드)
256	경기86아44 71	이*호	2018-09-03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길 **, ***호(수암동, 수암드림레츠빌)
257	36더4908	박*확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 ***동 ***호(청라동, 청라골드클래스)
258	84도8071	안*희	2018-09-10	50,0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 ***동 ***호 (황지동, 주공아파트)
259	82부4042	정*수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 **동 ***호(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
260	09보8432	김*자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261	56구0695	유*우	2018-09-1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동 ***호(학익동, 하나아파트)
262	18루2844	장*수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 **, ***호(문학동, 동서맨션)
263	53어3831	지*룡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창휘로*번길 ** ***호(십정동)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264	16루5367	정*석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부평동)
265	79조6631	박*배	2018-09-11	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 , ***동 ***호(산곡동, 현대아파트)
266	52노2856	신*만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267	54더7210	배*준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번길 **-* (송림동)
268	서울06과59 14	이*욱	2018-09-11	60,00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 , **동 ***호(신흥동*가, 향운아파트)
269	27주0341	김*석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 ***호(간석동, 서보한마음)
270	26러8723	양*봉	2017-10-19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호(작전동)
271	26러8723	양*봉	2017-10-2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호(작전동)
272	26러8723	양*봉	2017-10-17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호(작전동)
273	26러8723	양*봉	2017-10-2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호(작전동)
274	26러8723	양*봉	2017-10-24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호(작전동)
275	26러8723	양*봉	2017-10-26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호(작전동)
276	41하7737	홍*환	2018-07-1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번길 ** *동 ***호(장기동)
277	26러8723	양*봉	2017-10-27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호(작전동)
278	26러8723	양*봉	2017-10-3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호(작전동)
279	인천31바37 21	김*칠	2018-06-0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 ***호(주안동)
280	59호9054	김*찬	2018-07-23	50,000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번길 ***-** *동 ***호(송의동, 수봉아파트)
281	19고0975	양*영	2018-08-2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 , ***동 ***호(연수동, 영남아파트)
282	36소2228	남*진	2018-08-2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번길 **-* , ***호(청학동)
283	84어9515	이*형	2018-08-23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번길 *-* , 아동 ***호(성사동, 대성주택)
284	52도3780	이*흥	2018-08-23	50,000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번길 ** (소사본동)
285	02로7802	홍*규	2018-08-2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번길 **-* , *동 ***호(송의동, 한빛아파트)
286	35나0578	김*숨	2018-08-2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번길 ** , *동 ***호(작전동, 한양아파트)
287	90고2307	맹*호	2018-08-2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흥정동로**번길 * , *동 ***호(삼산동, 삼보아파트)
288	20하1840	정*수	2018-08-2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 , ***동 ****호(옥련동, 쌍용아파트)
289	27주0809	이*희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 ***동 ***호(남촌동, 청호아파트)
290	인천30바40 94	조*원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 ***동 ***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291	06더3771	LU***** *****	2018-08-24	5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번길 ** , ***호(방서동, 화이트빌)
292	인천30바44 62	정*욱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 ***동 ***호(관교동, 인천관교한신휴플러스)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293	58거7591	최*서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역로**번길 ** ***호(부평동, 트인레뷰)
294	66더4124	Jl***** ***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번길 *-* , ***호(갈산동)
295	83로9477	이*라	2018-09-03	50,000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번길 ** , 지층 ***호(천현동)
296	38서2746	배*원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 *동 ***호(구월동, 팬더아파트)
297	64구5758	김*윤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번길 ** , 나동 ***호(가정동, 성광아파트)
298	35노5503	윤*열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 , ****호(일신동, 하늘마을)
299	26서1070	최*중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 ***동 ***호 (용현동, 서해아파트)
300	59도0510	노*하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 ***동 ***호(마전동, 이지*차미래지향아파트*단지)
301	57너1948	신*성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 ***동 ***호(삼산동, 삼산타운)
302	49부1909	장*욱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번길 ** , ***동 ****호(효성동, 풍림아파트)
303	42우3355	김*욱	2018-09-0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 , ***동 ***호(산곡동, 금호이수 마운트밸리)
304	63소9519	김*환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 ***호(주안동, 드림하우스)
305	14모2943	김*태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번길 ** , ***호(송의동, 성신빌라)
306	19구6445	윤*만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 ***호(도화동, 뉴 더웰)
307	42주9864	이*선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 , ***동 ****호(삼산동, 삼산주공미래타운아파트)
308	83모3669	최*선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호 (주안동, 공단시장)
309	32우5908	소*조	2018-09-11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번길 **-* (중동)
310	11나1027	박*준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 *동 ***호 (십정동, 광명빌라)
311	23루8671	강*형	2018-09-11	50,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길 ** , ***동 ***호(주공아파트)
312	12어9798	이*제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번길 *-* ***호(신흥동*가)
313	64하2549	이*승	2018-07-2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번길 **-* ***호 (청학동, 벽천주택)
314	18호2414	정*기	2018-07-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 ****호 (간석동, 행복팰리스)
315	22호1436	김*창	2018-07-3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 , ***동 ****호 (가좌동, 인천가좌두산위브트레지움*단지)
316	66호1800	김*윤	2018-07-30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번길 ** (주안동)
317	01하6779	유*철	2018-07-30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번길 *-* (용종동)
318	60러3680	임*욱	2018-07-31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번길 ** , ***호(청라동, 지웰에스테이트)
319	34호6682	유*진	2018-08-0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서로**번길 ** , ***호 (용현동)
320	29호1511	이*호	2018-08-05	50,000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길 ** , ***호 (내손동)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321	09호5475	정*빈	2018-08-06	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길 **, ***호 (천호동, 다성이즈빌)
322	01호5873	최*진	2018-08-08	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 ***호 (백석동, 효성레제스오피스텔)
323	인천30바85 83	박*복	2018-08-0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324	34어4930	김*임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번길 **, ***호(송의동, 대현주택)
325	50부1241	김*경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번길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326	26더0531	정*철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327	14무0755	이*자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동 ***호(주안동, 쌍용아파트)
328	48수9232	김*섭	2018-08-24	5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번길 **-* **호(소사본동, 드림캐슬)
329	84우2509	권우**** ***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학익동)
330	30구1122	조*민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번길 **-* **, ***호(부평동, 선호하이즈빌라)
331	23소9187	허*복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332	03부7727	최*빈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 ***동 ***호(계산동, 한국아파트)
333	41러6915	이*현	2018-08-24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번길 **-* (송림동)
334	42주4923	김*규	2018-08-24	5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번길 *-** (토당동)
335	10루3008	박*윤	2018-08-25	50,000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 (회덕동)
336	16무9968	조*인	2018-08-25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그재산길 **, ***동 ****호(동양동, 주공아파트)
337	인천31라20 88	백*석	2018-08-2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동 ****호(송도동,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338	04로3580	김*민	2018-08-25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 ***동 ****호(중산동, 스카이스티자이)
339	64나4806	심*규	2018-09-03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가길 **, ***동 ***호(등촌동, 등촌*단지 주공아파트)
340	56저1053	손*호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동 ***호(주안동, 세건그린빌)
341	59마8272	김*애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번길 **, ***호(도화동, 다우림)
342	92마5450	태강**** ***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호(주안동)
343	40수0524	김*경	2018-09-04	50,000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번안길 **-* **, ***호(광명동, 삼성빌라)
344	46두3589	하*철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도화동, 아이홈아파트)
345	인천30바29 55	이*상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동 ****호(논현동, 주공아파트)
346	83구8652	김*이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동 ***호(산곡동, 현대아파트)
347	06어9128	김*호	2018-09-04	50,000	경기도 시흥시 마우로**번길 **, ***호(정왕동, 시화공단*바)
348	25노3744	박*성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349	16누0712	이*우	2018-09-04	50,000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번길 ** *동 ***호(괴안동, 염광아파트)
350	37무0873	이*화	2018-09-04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 *동 ***호(방화동, 트윈빌)
351	37누7084	박*복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 ***동 ***호(석남동, 보광그랑베르)
352	50어8641	김*희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번길 ** ***동 ***호(동춘동, 풍림*차아파트)
353	58어6875	윤*민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 ***호(용현동, 선우아파트)
354	53더1634	김*석	2018-09-11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 ***동 ***호(논현동, 소래휴먼시아)
355	45주6272	장*아	2018-09-11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번길 ** , 가동 ***호(심곡동, 나성빌라)
356	43구3713	문*민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 ***호(간석동)
357	50도3983	김*석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 캐슬&해모토)
358	28더6604	이*은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 ***호(간석동, 헤이미쉬)
359	60마4653	배*주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 (십정동)
360	48너4155	백*훈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동 ***호(만수동, 금호아파트)
361	54허2013	이*경	2018-08-08	50,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번길 ** ***동 ***호(송내동, 뉴서울아파트)
362	25오5240	(주*****	2018-08-08	50,000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 (도일동)
363	52하6271	주식**** *****	2018-08-10	5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 *동 *층 **호(한강로*가,원효전자상가)
364	09호5712	박*	2018-08-10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번길 *-* (경서동)
365	21호5045	신*식	2018-08-10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화곡동,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 ***동 ***호)
366	15하6870	최*재	2018-08-10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구월동,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 ****동 ***호)
367	26호7289	최*성	2018-08-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번길 ** ***호(간석동, 허브타운)
368	65하1692	(주***** *	2018-08-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 (고잔동) *층(고잔동, ****-* **)
369	02모0709	우*윤	2018-08-1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 *동 ***호(구월동, 대성빌리지)
370	인천30바14 17	정*세	2018-08-1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번길 ** , ***동 ***호(가좌동, 진주아파트)
371	30더1462	김*진	2018-08-1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 ***동 ***호(용현동, 인천 ** ** ** ***)
372	69주0156	신*삼	2018-08-1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수포로 *** , ***동 ***호(만수동, 햇빛마을벽산아파트)
373	58모6637	황*곤	2018-08-1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 ***동 ***호(간석동, 인천간석** *단지)
374	76가3081	이*년	2018-08-25	6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375	60버6592	김*우	2018-08-2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나루로***번길 ** , *동 ***호(주안동, 소망빌라)
376	68나9278	이*숙	2018-08-25	50,000	경기도 이천시 애련정로***번길 **-* , ***동 ****호(창전동, 현대아파트)
377	48거9170	이*자	2018-08-2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번길 **-* , ***호(용현동, 라온빌)
378	36나0504	유*준	2018-08-2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 ***호(문학동, 문학선수촌)
379	31누3676	정*환	2018-08-2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 ***동 ***호(원당동, 엘지원당자이아파트)
380	21보9637	김*열	2018-08-2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번길 *-* , ***호(옥련동, 센스빌)
381	01라8523	신*성	2018-08-2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번길 ***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382	73누5679	조*정	2018-08-26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 ***호(남촌동, 남촌빌라)
383	16서5277	유*규	2018-08-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384	22두5338	이*훈	2018-08-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번길 **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385	73보6600	한*수	2018-08-26	6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 , ***동 ***호(연수동, 인향아파트)
386	30다2276	김*자	2018-08-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387	인천32바2090	송*호	2018-08-2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산곡동)
388	67저8313	이*우	2018-08-2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 , *동 ***호(가좌동, 덕산아파트)
389	40노6839	이*옥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 , *동 ***호(항동*가, 연안아파트)
390	56도5372	이*애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 , *동 ***호(산곡동, 부연아트맨션)
391	53거7229	김*화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 , ***호(구월동)
392	25서3832	배*석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 , *동 ***호(가좌동, 진주아파트)
393	24더2942	최*진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 *동 ***호(부평동, 제이드)
394	89조3969	임*식	2018-09-04	50,0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 *동 ***호(효덕빌라)
395	19러0554	성*현	2018-09-04	50,00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로 ***-* , ****동 ***호(마송휴먼시아 매수리마을)
396	54수3930	이*래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 ***동 ***호(용현동, 용현*단지 금호타운)
397	80머7519	김*창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번길 ** , 나동 ***호(십정동, 상일연립)
398	37머8719	최*준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 ****동 ***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399	50어4616	정*수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나루로***번길 ** , *동 ***호(주안동, 영동빌라)
400	24도7779	문*운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 , ***동 ***호(송의동, 대준블루온)
401	02나0843	차*삼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번길 ** , 나동 ***호(가정동, 한성아파트)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 액	발송주소
402	40어6326	이*연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 ***동 ***호(청라동, 청라** ***)
403	89보5657	(주***** **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상로 **-* (구월동)
404	30서1601	김*석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번길 **, ***동 ***호(만수동, 남동아파트)
405	52구1641	차*행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번길 **, ***호 (부평동, 대광빌라)
406	31노8159	강*수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동 ****호(용현동, 인천 ** ***) ****)
407	62더8982	황*선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 (십정동)
408	35수1161	권*우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 ***동 ***호(도림동, 벽산블루밍아파트)
409	47러9787	김*실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동 ****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410	53저6350	최*훈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월적로 **, ***동 ****호(산곡동, 신명스카이뷰숲아파트)
411	34러6509	강*진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 **, ***동 ****호(가좌동, 인천가좌두산위브레지움*단지)
412	91주3442	손*택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413	28서0459	최*순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번길 **-*, 비**호(부평동, 진진빌라)
414	49노4185	김*정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동 ***호(청라동, 청라린스트라우스)
415	69도0113	전*우	2018-08-16	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나길 **-*, ***호(화곡동, 정감타운)
416	05머1562	한*국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번길 * ***호 (송의동, 대광빌리지*차)
417	66러5527	조*순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만수동)
418	28보0500	한*철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419	33보8943	신*수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 ***호(도화동, 연주프라임)
420	57고5005	조*형	2018-08-16	5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번길 **-* ***호(원종동, 대창스페이스빌)
421	36노9441	박*현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호 (구월동, 더클래스)
422	25도9329	주식**** *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번지 *호 주안역 지하상가
423	32버6616	이*태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번길 **-**, 나동 ***호(용현동)
424	37머8904	홍*기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대로 **, *동 ***호(간석동, 영남아파트)
425	03고4323	박*미	2018-08-26	50,0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번길 *, ****동 ***호(남악신도시모아엘가*차아파트)
426	39오5836	김*길	2018-08-2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간석동, 다정한마을서해아파트)
427	64소5892	김*애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학길**번길 **-**, ***동 ***호(주안동, 대주아트빌)
428	36수8884	신*우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429	20러7816	양*례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번길 ** , ***호(칭천동)
430	16버8512	임*우	2018-09-04	5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길 *** ,***동 ***호(미아동, 삼각산아이원아파트)
431	19어3424	김*수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번길 ** , ***동 ***호(십정동, 라비캐슬)
432	59서7698	차*희	2018-09-0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번길 ** *동 ***호 (부평동, 우정우드빌)
433	25부8094	김*순	2018-09-05	50,000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 (과천동)
434	37보6818	윤*철	2018-08-27	50,000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 ***동 ***호(정왕동, 화성아파트)
435	73수5676	김*윤	2018-08-27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번길 ** , 나동 ***호(간석동, 팬더아파트)
436	73고7913	박*희	2018-08-27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주안동, 예현아트빌라)
437	57버8133	김*임	2018-09-05	50,000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신월로 ***
438	16우8878	김*란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번길 ** , ***호(남촌동, 금우빌라)
439	22수9626	선우**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 , ***동 ***호(관교동, 풍림아파트)
440	37소0376	서*경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 ***동 ***호(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
441	77무9152	윤*직	2018-09-05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번길 **-** (도화동)
442	56마8592	전석**** *****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 ***호(주안동, 롯데아트맨션)
443	08더1708	이*민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인증로***번길 ** (사동)
444	90부0933	윤*영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인트아파트)
445	68더4325	박*명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안길 **-** , ***동 ***호(마전동, 동남아파트)
446	73부2764	광명**** ***	2018-09-12	3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번길 * , ***호(서창동, 하온아트빌)
447	30조6986	유*홍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 ***동 ***호(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트)
448	84보5727	박*섭	2018-09-12	50,000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골길 ** , ***동 ***호(원당동, 청구아파트)
449	27더3179	장*현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호 (도화동)
450	06가9024	박*미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번길 ** ***호 (부평동, 해피플러스)
451	48보0337	김*현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번길 **- *동 ***호 (산곡동, 송광아트빌)
452	15고9892	이*영	2018-09-12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 ***호(주안동, 아름빌라)
453	48노9606	문*실	2018-09-12	50,00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번길 ** , *층(중앙동*가)
454	73머1666	장*봉	2018-08-16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번길 **-** , *동 ***호(주안동, 진흥빌라)
455	22주4998	김*환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 ***호(간석동, 월드리치빌)
456	11두4306	정*호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호 (주안동, 노블리스빌)
457	19더3164	길*정	2018-08-16	50,000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번길 **-*** (심곡동)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458	48누9869	김*형	2018-08-16	50,000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 ***동 ***호(미장동, 군산미장휴먼시아)
459	92러5575	황*원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구보로**번길 *-* **동 ***호(십정동, 동방빌라)
460	45수9074	손*정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 *동 ***호(가좌동, 우진빌라)
461	48도0225	송*관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향로**번길 *-* *동 ***호(송림동, 썬터빌리지)
462	67하1091	주식**** **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버들로 **, ***동 ***호(왕길동,검단자이*단지)
463	45우0567	김*복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번길 **-* (주안동)
464	50더1809	홍*진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호(주안동, 새늘주안아파트)
465	27너2055	최*태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번길 **-* , ***호(도화동, 그랜트아파트)
466	23고7385	김*년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 나동 ***호(구월동, 희망연립)
467	27우4897	이*림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 ***호(송의동, 대운빌라)
468	60저5186	김*민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산로 **, ****호(주안동, 두산아파트)
469	87나5910	김*균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 *층(도화동)
470	27두6601	박*희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주안동)
471	68주3329	권*훈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 ****호(송의동, 스카이스테이트)
472	83너2729	유*철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동 ****호(만수동, 주왕아파트)
473	67어6111	김*철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호(만수동, 대하다세대주택)
474	59저6530	프로**** *****	2018-08-27	50,00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월산동)
475	33부5492	김*중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우각로 **, *층(송의동)
476	24로4025	김*자	2018-08-27	5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번길 **, ***호(구암동, 샘물빌라)
477	60도1661	최*석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호(간석동)
478	54누5536	이*수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번길 **-* , ***동 ***호(용현동, 백송빌라)
479	40두6061	이*연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간석동, 은하아파트)
480	06서7514	이*림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번길 ** , ***호(옥련동, 미산빌라)
481	39구5512	김*균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 ***동 ****호(청라동, 청라동양엔파트)
482	54무8571	이*훈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 ***동 ***호(주안동,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483	12머0632	서*원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 , ***동 ***호(산곡동, 현대아파트)
484	68무5354	박*분	2018-09-05	50,000	경기도 부천시 까치로 **, *동 ***호(작동, 한맥프라임빌)
485	67누3187	강*채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486	34두6557	(주*****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호(간석동, 어울림마을금호아파트 어울림상가제*상가)
487	86오6775	심*식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번길 **-* 지하층호 (동춘동)
488	02주0236	김*수	2018-09-05	50,000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 ***동 ***호(근형심포니아아파트)
489	14저9778	윤*상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490	09서0539	이*호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 , ***동 ***호(효성동, 태산아파트)
491	47머7479	김*희	2018-09-13	50,000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 , ***동 ***호(상동, 한아름)
492	28너1514	박*택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번길 * ***호 (송의동)
493	12도6069	조*구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 ***동 ***호(간석동, 센트라움)
494	89노1803	이*준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만수동, 한샘다세대주택)
495	42저6470	박*환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 , ***동 ***호(부개동, 주공아파트)
496	73보5726	(주***** **	2018-09-13	6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 , *동 ***호(원곡동, 원곡유통상가)
497	42두3352	박*희	2018-08-1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 **동 ***호(부평동, 동아아파트)
498	11부8384	장*진	2018-08-16	5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길 ** (이동)
499	28마7955	김*규	2018-08-17	50,000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 , ***동 ***호(검산동, 주공아파트)
500	16고6297	박*환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 ***동 ***호(신현동, 신현*~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501	66고0468	박*성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외전로 *** , ***동 ***호(송의동, 한아름아파트)
502	75어2947	김*곤	2018-08-17	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번길 ** *동 ***호 (부개동, 한성빌라)
503	68로6290	박상***** ****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504	19모8032	이*심	2018-08-17	50,000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 , ***호(주압동)
505	30로0639	신*식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 , ***동 ***호(용현동, 신창미션힐)
506	22저4267	김*영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 ***동 ***호(간석동, 어울림마을아파트)
507	인천30바26 55	유*호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번길 ** , 가동 ***호(학익동, 삼경아파트)
508	58라7283	민*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번길 ** , ***호(관동*가, 건흥아파트)
509	41가6724	유*승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 ***호 (계산동)
510	인천30바10 12	오*중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번길 ***-* (십정동)
511	56러1739	이*호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번길 **-* ***호 (십정동)
512	53보5525	이*진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 ***호(도화동, 뉴 더웰)
513	09누7953	전*승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 ***동 ***호(청라동, 청라**)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514	25오2564	김*주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 ***호(부평동, 센트레빌)
515	81수6220	김*희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나루로***번길 **-* 지하층 나동 *호 (주안동, 상일빌라)
516	43루2737	안*자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 가동 ***호(구월동, 등지빌라)
517	30마4597	김*란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번길 ** (청천동)
518	33부0218	박*미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 ***동 ***호 (청천동, 효마을빌라)
519	89보6958	구*식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층(만수동)
520	43누0417	지*욱	2018-08-2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521	14수7213	김*수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 *동 ***호(마전동)
522	65라9341	박*연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 , ***동 ***호(연수동, 영남아파트)
523	68두2789	강*양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 , ***동 ***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524	87다9365	이*화	2018-09-05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학길 **-* , ***호(주안동, 신영랜드)
525	92라4750	손*우	2018-09-06	50,000	강원도 강릉시 강변북길 ***-* *동 ***호 (송정동)
526	59구0335	이*혁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번길 **-* , ***호(도원동, 현대빌라)
527	13러0888	신*정	2018-09-13	50,000	경기도 부천시 소항로 *** , ***동 ***호(중동, 미리내마을)
528	26보3069	이*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529	12너6892	조*은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번길 ** , ***호(간석동, 퍼스트클래스)
530	82수0608	이*숙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 (용현동)
531	45주3402	김*정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번길 ** , *동 ***호(검암동, 하모니카운티*차)
532	33나9573	서*정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 ***동 ***호(만수동, 주공아파트)
533	20거3338	남*희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 ** , ***동 ****호(송도동, 롯데캐슬)
534	19버4281	김*원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번길 ** , *동 ***호(항동*가, 비취맨션)
535	86부8580	박영**** *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번길 ** , ***동 ****호(학익동, 엑슬루타워)
536	38거1467	노*희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 나동 ***호 (도화동, 유림빌라)
537	78거8798	김*국	2018-09-13	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 *층(만수동)
538	63거1921	김*수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서로**번길 ** , *층동(구월동)
539	06노2781	서*이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공원로 ** , ***호(부평동, 정원오피스텔)
540	65부3870	강*자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 ***호(간석동, 인향아파트)
541	25무8381	노인**** *****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함봉로**번길 **-* , ***동 ***호(십정동, 지훈캐슬)
542	51소3410	강*진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번길 ** , ***호(신흥동*가)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543	49머2909	최*호	2018-08-17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길 ** ***호 (용담이동)
544	18마1632	신*정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주안동)
545	49로7714	김*완	2018-08-17	50,0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번길 **, 라동 ***호(송내동, 삼송연립)
546	09라8342	이*민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단지아파트)
547	01마2382	김*기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 ***호(가좌동, 대미안아파트)
548	25너4075	윤*수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번길 **, *층(금곡동)
549	33러5468	최*임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번안길 * (덕교동)
550	42루0361	(주***** *)	2018-08-27	50,000	경기도 부천시 소항로 **, ***호(중동, 프라움시티)
551	91더9352	김*용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호(간석동)
552	49수1324	김*훈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번길 **-*, ***호(주안동, 건주탑스빌라)
553	05구9518	정*교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 ***호(부평동, 미성아파트)
554	18저1890	방*현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계로***번길 **, ***동 ***호(작전동, 동보아파트)
555	94모7518	김*준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 ***동 ***호(연수동, 우주아파트)
556	서울50머53 46	조*석	2018-08-28	5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가길 * (봉천동)
557	31누4247	김*수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기길**번길 **-*, ***호(주안동, 한성맨션)
558	52부4077	이*희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만수동, 효성상아맨션)
559	02거8288	이*주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 ***동 ***호(구산동, 부평차이아파트)
560	인천86바45 60	임*수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번길 **, *동 ***호(청천동, 동양아파트)
561	48서6305	나*락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번길 **, ***동 ***호(가정동, 동우아파트)
562	29주5427	강*규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동 ***호(만수동, 삼환아파트)
563	06마6790	장*천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564	50너8143	유*별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565	02러7594	박*환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단지)
566	52도3780	이*홍	2018-09-06	50,000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번길 ** (소사본동)
567	11러6105	이*영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 ***동 ***호(연수동, 연수주공*차아파트)
568	38가7755	김*심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구월동, 대원빌라)
569	32두6268	박*후	2018-09-13	5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 ***동 ***호(휴먼시아 동화마을)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액	발송주소
570	26모2118	박*화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사곶로 ***-*
571	68보8585	안*원	2018-09-13	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길 **, ***동 ***호(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차)
572	30너2304	김*열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 *동 ***호(가정동, 대림빌라)
573	16부4270	장*열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윗우물로 **, ***호(석남동, 미리내아파트)
574	57가1953	이*상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동 ***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575	66구3206	박*비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동 ***호(도화동, 도화한승미메이드)
576	49마0658	고*숙	2018-09-13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577	27머9435	노*근	2018-09-13	50,000	경기도 화성시 탄요*길 **~**, ***동 *호(반송동)
578	55무5709	최*현	2018-09-14	50,000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 ****동 ***호(상동, 진달래마을)
579	경기93아90 81	(주*****	2018-09-14	50,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어산길 **
580	인천81바80 09	박*길	2018-08-17	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 ***동 ***호(부개동, 주공아파트)
581	22버4026	김*식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 ***동 ***호(석남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582	58버8705	박*우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도화동)
583	40어5905	임*현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번길 * , *층(운남동)
584	인천30바15 02	주*균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 , ***동 ***호(석남동, 창대빌라)
585	09조9698	신*은	2018-08-17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 ***~* , *동 ***호(경서동, 파크빌)
586	59어6432	김*숙	2018-08-18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번길 ** , 가동 ***호(박촌동, 대원리치빌)
587	51고5622	양*수	2018-08-18	50,000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동 ****호(중동, 미리내마을)
588	53오0350	김*웅	2018-08-1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번길 **, ***동 ***호(마전동, 마전*차풍림아이원아파트)
589	24다8715	김*숙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 *층(구월동)
590	인천80머42 10	송*중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 , ***호(관교동)
591	15하6861	정*철	2018-08-28	50,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번길 **, ***동 ***호(정왕동, 신우아파트)
592	47러2078	정*태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번길 * , ***호(신현동, 대성하이츠빌라)
593	05우7245	나*운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 ***호(송의동, 다인리치뷰)
594	62마7291	김*민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번길 **~** , ***호(가정동, 바로크아파트)
595	05너2950	박*하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 ***호(구월동, 이즈)
596	16고6003	임*운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동 ****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 액	발송주소
597	26수4809	박*영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호 (주안동, 로템하우스)
598	33주7175	방*배	2018-08-28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 ***동 ***호(산곡동, 현대아파트)
599	73우1911	이*원	2018-08-29	6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번길 **, ***호(계산동, 신원빌라)
600	34노8720	김*강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동 ***호(논현동, 논현유희엔시티 *단지)
601	인천30바22 71	박*준	2018-08-29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안길**번길 * (송의동)
602	09주5005	임*희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호(간석동, 이즈아파트)
603	41나9787	곽*민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층(간석동)
604	17부4102	소*경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번길 **-* *동 ***호 (간석동, 삼우아파트)
605	15나2801	권*출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번길 *--**, ***호(도화동, 동신하이츠빌라)
606	03버8082	윤*라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번길 **-*, ***호(구월동, 상명하이츠빌라)
607	17도0679	권*섭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 ***호(부평동, 힐탑)
608	86서7816	문*하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 *동 ***호(갈산동, 아주아파트)
609	73누6959	이*순	2018-09-06	6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번길 * , ***호(주안동, 모드니에플러스)
610	33서5757	김*양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번길 **(십정동)
611	02나0843	차*삼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번길 **, 나동 ***호(가정동, 한성아파트)
612	13주8815	구*환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번길 ***, **동 ****호(학익동, 신동아아파트)
613	18다3217	임*순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번길 *, ****호(도화동, 엔에스파크)
614	56수4025	최*리	2018-09-06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동 ***호(도화동, 동원아파트)
615	58모6703	이*구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번길 ** ***호(경동)
616	04어3114	김*국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번길 **, ***호(도화동, 신성드림빌)
617	92두5838	서*기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동 ***호(부개동, 대동아파트)
618	56무8448	정*승	2018-09-14	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번길 *, 가동 ***호(중동, 동원아파트)
619	23가1066	WA***** ****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번길 **, ***호(사동)
620	19보2284	백*영	2018-09-14	50,000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 ***동 ****호(약대동, 부천아이파크)
621	인천30바 5376	권*덕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 단풍마을 휴먼시아)
622	65도8851	김*관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번길 ** (주안동)
623	29부6034	김*호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 ***동 ****호(용중동, 초정마을하나아파트)
624	53더1097	강*철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서창동, 엘에이치청아안)

연번	단속차번	납부자명	단속일	금 액	발송주소
625	25너4178	김*명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 , ***호(도화동, 삼라마이다스)
626	63더7236	이*지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 ****호(구월동, 주상복합중앙헤리티지)
627	46루0419	김*구	2018-09-14	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번길 **~** , ***호(서창동, 청봉주택)

-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26.
-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8500, Fax 032-440-3929)

2018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29호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선정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탁운영 개요**

가. 사업명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나.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다. 사업량

○ 2019년도 순위별 사업량(시각장애인안마사 배분)

구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사업량	50명	25명(50%)	15명(30%)	10명(20%)	
구역별	8개 구	연수구·남동구·부평구	중구·동구·서구	미추홀구·계양구	

\* 강화·옹진군은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장거리 이동 불가로 제외

\* 2019년 국비 내시금액 및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후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배분에 의거 추후 적용

☞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량 배분(1순위:2순위:3순위=50%:30%:20%)

※ 본 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단위(1월~12월)의 단절사업으로 반복 참여자(1년 이상 참여자)를 계속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사업의 지속성·안정성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위탁하는 사항임.

##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단체·복지관(지부만 해당)으로, 반드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

\* 참여 가능한 국가공인 안마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은 신청 제외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이어야 함.

##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1. 16.(금) ~ 11. 20.(화) 09:00~18:00

나.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본관 1층)

다.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 내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1) 사업위탁신청서
- 2) 사업계획서(2019~2021년)
- 3) 협회·단체·복지관의 소속 안마사 회원 명부
- 4) 최근 3년간(2016~2018.10월말) 기관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 5) 최근 3년간 기관의 인력관리 경험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임금 지급, 보험 가입 등)
- 6) 10명 이상 수송 가능한 차량 확보관련 자료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
- 7) 안마사 휴게 공간 사진 첨부
- 8) 기관 등기부등본(인감증명 첨부) 및 설립허가증 사본
- 9) 기관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  
(대표 이력서, 기관설명서, 정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10) 기관 대표(협회장, 단체장)의 최근 3년간 사회복지분야 수상실적
- 11) 기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선정심사에 참고 될 수 있는 증빙자료

마. 제출방법

- 목록 순서대로 제본(A4종) 10부 제출(목차 및 페이지 기입)
- 파일자료 별도 제출([hoy1980@korea.kr](mailto:hoy1980@korea.kr))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

#### 4. 선정방법

가. 별도 구성한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심사

##### 나. 심사방법

-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사업계획 설명(파워포인트 발표 가능)
  - 사업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시간 제공(접수순)
-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순(1~3순위)으로 사업량 배분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만 재심사 : 「사업관리능력」 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재심사 결과 다시 동점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 1개 기관만 신청할 경우, 재공고 예정(2개 이상의 기관이 신청하였을 때 심사 추진)
- 심사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위원회 일정은 신청서 접수 시 별도 안내

#### 5. 선정항목 및 배점

구분	계	사업수행능력(60)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관리 능력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단체장의 의지
배 점	100	20	20	10	5	5	30	10
감 점 (-10점 이내)	2016.1.1일 이후 지도·감독(감사부서 포함)부서로부터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회계 및 법령 위반 사항)							
사업 관리 능력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 경험							
인 력 관 리	안마사 회원수 확보, 기관 담당인력의 전문성							
서 비 스 제 공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지원 여부, 참여자의 휴게공간 확보							
운영주체의공신력	기관 및 기관장의 수상실적							
재 정 능 력	사업 운영시 자부담 가능 여부							
사업계획의적정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성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계획 적절성							
단체 장 의 의 지	기관 대표의 전문성 및 의지							

#### 6. 선정 발표 : 2018. 12. 4.(화) 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기관별 개별 통보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기타사항

- 동 사업은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으로 안마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 외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모든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규정을 준수합니다.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자를 사업에 참여시킬 경우,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인천시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인천시의 명예훼손 및 민원발생시 등
- 민간위탁 방법 및 공고사항은 2018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안내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무 민간위탁 운영 업무처리 지침」에 의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운영방안, 자부담계획, 사업운영 예산서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 자부담 확보방안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불이행시 사후 책임방안 제시
- 위탁기관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설명으로 심사함으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위탁 협약이 취소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440-2943)

붙임 :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인천광역시공고 2018-1535호

**「2018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행사주관사 모집 공고**

「2018 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 11. 7.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18 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 나. 행사일시 : 2018. 12. 31.(월) 20:00 ~ 2019. 1. 1.(화) 00:05
- 다.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라. 내용 : 타종식, 새해맞이 불꽃쇼, 송년콘서트, 떡국 나눔 등
- 마. 사업비 : 70백만원 (단, 추가비용 발생시 보조사업자 전액 부담)

**2. 신청자격**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공연·축제행사 및 문화이벤트 등을 수행한 실적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3건 이상이 있는 인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
  - ⇒ 공모신청서 접수 시 실적증명서 제출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횡령 등 법령위반 단체**

### 3. 공모 및 접수

- 가. 공모기간 : 2018. 11. 7. ~ 2018. 11. 20. 18:00까지 (14일간)
- 나. 접수기간 : 2018. 11. 16.(금) ~ 11. 20.(화). 18:00까지(평일 3일간)
-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본관 5층), ☎032-440-4023
-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4. 신청서류

- 가. 공모신청서 및 서약서(붙임 서식) 1부.
- 나. 「2018 송년제야의 밤 문화축제」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6부.
- 다. 실적증명서 1부.
- 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단체)등록증 1부.

###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가.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선정
  -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군·구)에 중복 제출한 경우 지원 배제
    - 단독 신청시 : 사업수행적격 여부 심사 및 선정
    - 복수 신청시 :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및 선정
-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50)
  - 행사내용의 적합성(40)
  - 사업수행능력(10)
- 다. 선정통보 : 선정 단체 개별 통보

## 6.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 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 나.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 7. 기타사항

- 가.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나. 법인·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 제외함
- 라.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함.
- 마.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사. 심사결과 적격 단체가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참가등록을 한 단체가 1개 단체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 자. 공모신청서에 서류미비로 인한 심의 시 탈락은 제출자 책임임.
- 차. 자부담은 **법인(단체) 자율적 부담 원칙**.
- 카.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부서(문화예술과)에 문의.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4022)

**붙임**

**신청서 등**

「2018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행사주관 사업자 선정

# 공 모 신청서

신청 개요	업체(단체)명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E-mail :		E-mail :		
단체 소개	설립연도			
	설립목적			
	인적구성 (조직도)			
	자산내역			
	활동실적	※ 사진, 인쇄물, 보도자료 등 첨부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6부. ○ 실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단체)등록증 1부.			

상기 기재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2018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행사주관 사업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018년 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행사주관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b>사업명</b>	☞ 표지의 신청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b>사업기간</b>	2018. ○. ○. ~ ○. ○.	<b>총기간일수</b>	총 ○ 일		
<b>사업장소</b>	☞ 행사 메인장소 혹은 주요장소를 기재. 예) ○○○, ○○○ 외 3개소				
<b>사업내용</b>	○ ☞ 세부 프로그램명을 간략히 기재 ○				
<b>참가규모</b> ☞ 참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 전체 규모를 기재	<b>예술단체</b>	계	국내	해외	
		○팀	○팀	○팀	
	<b>예술가 (스태프 포함)</b>	계	예술가	스태프	기타
		○명	○명	○명	○명
<b>사업비(예산)</b> ☞ 지원신청내용을 포함한 예산계획을 기재	구분	예산액(원)	비율(%)	확정 여부	
	시 보조금	70,000,000	100	확정	
	민간후원금				
	자체 부담금				
	계				
<b>주최</b>	☞				
<b>주관</b>	☞				
<b>후원</b>	<b>(확정)</b>	☞ 확정된 후원 혹은 협력기관, 기업체 등을 기재			
	<b>(미정)</b>	☞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협의 중인 기관, 기업체 등을 기재.			
<b>신청단체</b>	○ 단체명 : ○ 대표,임원, 실무 책임자 등				
	직위 직책	이름	연락처(핸드폰)	e메일	
	☞ 실제 사업 담당자의 해당내용을 기재				

**1 사업 목적 및 기획 의도**

사업 목적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기술하여 주시되, 사업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 등도 추가로 기재
- 
- 
- 

행사 주제 (혹은 기획 의도)

- 2018년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콘셉트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 
- 
- 

**2 세부사업계획**

사업개요

- 기간 :
- 장소 :
- 내용 :

사업 목표

구 분	관람객 (명)	행사규모 (명/팀)		비 고
		공연행사	부대행사	
송년제야의밤 문화축제				

향후, 결과보고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 /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통계, 보도기사, 관련 리뷰 등)

세부 프로그램 내용 (상세히 기술)

○ 주요 행사 (예시)

구분	내용		관람객(명)	비고
본 행사	일시	2018. 0. 0		
	장소	000		
	내용			
부대행사	일시	2018. 0. 0 ~ 0. 0		
	장소	000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일시			
	장소			
	내용			

○ 사업 장소

공연장 (또는 장소명)	행사장 규모 (객석수 또는 공간면적)	비고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석	

지역성과 연계된 특성화 (혹은 차별화) 방안

○ 개최 지역의 특성 또는 지역적 소재(역사, 문화, 장소, 인물 등)가 지닌 독창성과 연관된 본 사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기술

-

○

-

추진 프로세스(추진일정 및 절차)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18. ○~○	기본 방향 설정 및 자료 조사	
2018. ○~○		
2018. ○~○		
2018. ○~○		

☞ 신청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재  
주제 선정, 참가자 결정, 사업 준비 및 전개 과정, 결과물 공유 및 확산 등 신청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추진 방법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설명

안전관리계획 ☞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시설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조직도



○ 비상시 조치, 연락처

구분	조치담당업무	책임자(소속)	연락처
○○○콘서트홀		○○○(단체명)	
○○○야외무대		○○○(단체명)	

○ 안전관리인력 확보

구분	조치담당업무	관리요원(소속)	비고
○○○콘서트홀		○○○(단체명)	
○○○야외무대		○○○(단체명)	

○ 안전대비 관련 단체보험 가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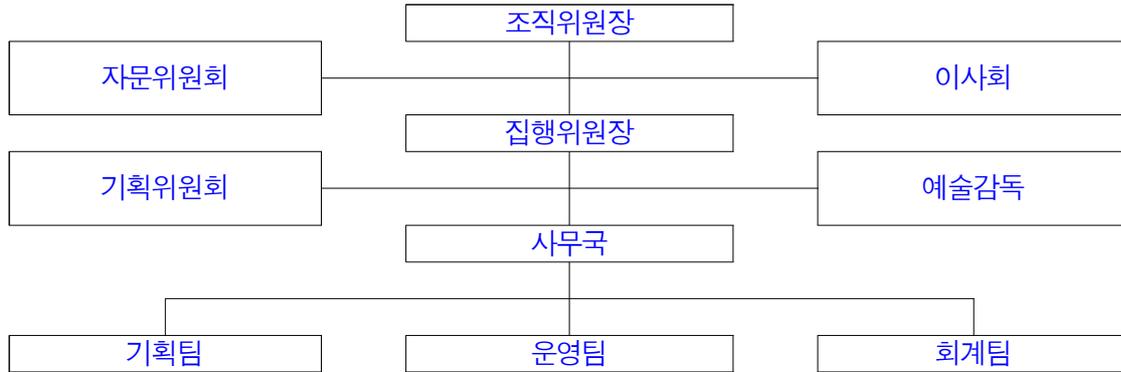
-

안전관리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지출액	신청액
안전요원 인건비	10만원×10인×7개 행사	7,000,000원	7,000,000원
행사 보험료	200만원×1식	2,000,000원	자부담
구급약품 구입	50만원×1식	500,000원	자부담

### 3 조직 체계 및 운영 인력

운영 조직도(예시)



☞ 사업을 주최(주관)하는 조직의 구성을 알 수 있는 조직도를 위와 같은 이미지나 도표 형태로 작성

운영 인력

○

-

구 분	역 할	성 명	현직 / 주요경력	비 고
①	위원장	○○○		상근
⑥	예술감독	○○○		비상근

☞ 위 운영 조직도의 세부 구성 인적사항을 위 예시와 같이 작성

### 4 예산 계획

수입

(단위 : 원)

구 분	구 분	금 액	비율(%)	확정 여부
사업수입 (A)	사업 수입		00.0%	
	사업 외 부대수입		00.0%	
공공재원 (B)	국고보조금(문체부 및 소속기관)		00.0%	
	지자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		00.0%	
	지자체보조금 (기초자치단체)		00.0%	
	기타 국고 및 공공기관 지원금		00.0%	
민간재원 (C)	기업협찬 후원금		00.0%	
	개인 기부금		00.0%	
자체부담 (D)	순수한 단체의 자체 부담금		00.0%	
	계(E)		100.0%	
재정자립도	$[(A+D) / \text{총 수입액}(E)] \times 100\%$		00.0%	

☞ 본 공모사업의 2018년도 재원은 시 보조금으로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히 기재.

지출 예산

☞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동일해야 하며, 지출예산의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작성  
 지출예산 중 간접사업비(상주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단체 운영 경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 지원은 직접 사업비로 제한)

(단위 : 원)

구분	항목	산출 근거	지출액	지원 신청액	
				보조금	자기부담금
공연비	연출자 사례비				
	스태프 사례비				
	출연자 사례비				
제작비	영상/녹음 제작비				
	무대/소품 제작비				
임차료	공연장 대관료				
	연습실 대관료				
	장비/악기 대여료				
인쇄 홍보비	광고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대행료	회계검사 대행료				
	통번역 대행료				
	지급수수료				
일반운영비	안전관리비				
계					

**5** **홍보·마케팅 및 관객 개발 계획**

홍보·마케팅 계획

- 예) 사전 홍보 계획  
-
- 예) 매체 홍보 계획  
-
- 예) SNS 및 온라인 홍보 계획  
-
- 예) 인쇄물 또는 설치물 제작·활용 계획  
-
- 예)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활성화 계획  
-

**관객 개발 계획**

- 예) 할인, 패키지를 통한 취약계층 초청 계획  
-
- 예) 타 지역 관람객 및 해외 관광객 유입 활성화 계획  
-
- 예) 관련 이벤트 및 캠페인 활용 계획  
-

**6**

**파급효과(기대효과)**

**인천의 가치 재창조 또는 문화향유에 대한 기여도**

- 
- 
- 
- 

**자체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 예) 관람객 만족도 조사 추진  
-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주요 조사내용, 결과 환류
- 예)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주요 조사내용, 결과 환류

**7**

**참고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언론, 전문지 보도 등)

「2018송년 제야의 밤 문화축제」 행사주관 사업자 선정  
**공모 신청자 서약서**

단 체 명	
-------	--

본 단체에서 제출한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공연을 진행한다.

2018년 11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36호

## 도시계획시설(새별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새별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458-718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녹지과(450-68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8. 11. 12.**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7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 2) 명 칭 : 새별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m <sup>2</sup> )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m <sup>2</sup> )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최초	새별 근린공원	공원	121,633	121,633	-	1944.01.08. (고시 1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 12. 31일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 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부. 끝.

##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소	
합 계				146,827.0	121,633.0			
1	효성동	123-80	장	4.0	4.0	태00000(주)	남동구 구월동	
2	효성동	123-122	전	12,948.0	7,505.0	효00000(주)	계양구 작전동	
3	효성동	123-124	임	5,532.0	981.0	효00000(주)	계양구 작전동	
4	효성동	산59-1	임	12,893.0	12,893.0	산림청		
5	효성동	산59-2	임	1,518.0	1,518.0	인천광역시 (교육감)		
6	효성동	산72	임	8,529.0	5,000.0	산림청		
7	효성동	산73-11	임	2,714.0	2,714.0	기00000000 아00000	계양구 효성동	
8	효성동	산73-15	임	8,001.0	8,001.0	이00	부평구 갈산동	
9	효성동	산74-1	임	39,113.0	37,860.0	산림청		
10	효성동	산74-7	임	1,023.0	1,023.0	산림청		
11	효성동	산75-1	임	24,502.0	24,502.0	대00000(주)	부천시 내동	
12	효성동	산82	임	30,050.0	19,632.0	산림청		

□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효성동	산59-1임		건물, 창고		1161.80	m <sup>2</sup>								
				담장, 휨스 L=134.7m											
2	효성동	산73-11임		건물		380.80	m <sup>2</sup>	기000000 00 아000000							
				담장, 휨스 L=103.5m , 계량기 1개소, 정화조 1개소	담장, 휨스 L=103.5m, 계량기 1개소, 정화조 1개소			담장, 휨스 L=103.5m , 계량기 1개소, 정화조 1개소	담장, 휨스 L=103.5m , 계량기 1개소, 정화조 1개소	담장, 휨스 L=103.5 m, 계량기 1개소, 정화조 1개소					
3	효성동	산74-7임		창고, 기계실		42.80	m <sup>2</sup>								
				천막가리 개, 휨스 L=121.1m , 분묘 8개소, 조명등 2개소, 가로등 제어기 1개소, 계량기 1개소	천막가리 개, 휨스 L=121.1m, 분묘 8개소, 조명등 2개소, 가로등 제어기 1개소, 계량기 1개소			천막가리 개, 휨스 L=121.1m , 분묘 8개소, 조명등 2개소, 가로등 제어기 1개소, 계량기 1개소	천막가리 개, 휨스 L=121.1m , 분묘 8개소, 조명등 2개소, 가로등 제어기 1개소, 계량기 1개소	천막가리 개, 휨스 L=121.1 m, 분묘 8개소, 조명등 2개소, 가로등 제어기 1개소, 계량기 1개소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	효성동	산75-1임		건물, 창고		518.68	m <sup>2</sup>							
				계량기 1개소, 정화조 1개소										
5-1	효성동	산82임		건물, 창고		824.37	m <sup>2</sup>							
				분묘 3개소, 계량기 2개소										
5-2	효성동	산82임		건물		323.48	m <sup>2</sup>							
				웬스 L=188.2m, 분묘 4개소										
6	효성동							한국전						
				한전주 8본										
7	효성동							한국전						
				체신주 4본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효성동	산59-1임	1	건물	함석, 판넬	m <sup>2</sup>	65.74									
			2	건물	슬레트, 벽돌	m <sup>2</sup>	115.72									
			3	건물	함석, 판넬	m <sup>2</sup>	158.90									
			4	건물	슬레트, 벽돌	m <sup>2</sup>	224.00									
			5	건물	함석, 판넬	m <sup>2</sup>	235.18									
			6	건물	슬레트, 벽돌	m <sup>2</sup>	124.16									
			7	건물	슬레트, 벽돌	m <sup>2</sup>	194.66									
			8	창고	슬레트, 벽돌	m <sup>2</sup>	5.78									
			9	창고	슬레트, 벽돌	m <sup>2</sup>	3.63									
			10	창고	슬레트, 벽돌	m <sup>2</sup>	9.40									
			11	창고	슬레트, 벽돌	m <sup>2</sup>	8.16									
			12	창고	천막	m <sup>2</sup>	16.47									
			13	담장	함석	m	16.50									
			14	담장	콘크리트	m	13.70									
			15	휨스		m	104.5									
소 계						m <sup>2</sup>	1161.80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	효성동	산73-11임	1	건물	슬래트, 벽돌	m <sup>2</sup>	380.8							
			2	휨스		m	43.5							
			3	담장	콘크리트	m	60.0							
			4	계량기		EA	1.0							
			5	정화조		EA	1.0							
소 계						m <sup>2</sup>	380.8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	효성동	산74-7임	1	창고	천막	m <sup>2</sup>	24.60							
			2	창고	콘테이너	m <sup>2</sup>	12.48							
			3	기계실		m <sup>2</sup>	5.72							
			4	천막 가리개		m	53.6							
			5	휨스		m	67.5							
			6	분묘		EA	8.0							
			7	조명등		EA	2.0							
			8	가로등 제어기		EA	1.0							
			9	계량기		EA	1.0							
소 계					m <sup>2</sup>	42.80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	효성동	산75-1임	1	창고	함석,판넬	m <sup>2</sup>	97.44							
			2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43.60							
			3	창고	함석,판넬	m <sup>2</sup>	16.32							
			4	창고	함석,판넬	m <sup>2</sup>	15.50							
			5	창고	함석,판넬	m <sup>2</sup>	20.00							
			6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54.00							
			7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71.82							
			8	계량기		EA	1.0							
			9	정화조		EA	1.0							
소 계					m <sup>2</sup>	518.68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1	효성동	산82임	1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31.49							
			2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72.98							
			3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08.04							
			4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8.86							
			5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7.83							
			6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93.50							
			7	창고	함석,판넬	m <sup>2</sup>	9.12							
			8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54.92							
			9	창고	함석,판넬	m <sup>2</sup>	7.28							
			10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46.20							
			11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6.00							
			12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69.90							
			13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98.26							
			14	분묘		EA	3.0							
			15	계량기		EA	2.0							
소 계						m <sup>2</sup>	824.37							

번호	소재지		부호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소	취득일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2	효성동	산82임	1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57.24							
			2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7.10							
			3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21.42							
			4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42.00							
			5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00.35							
			6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72.57							
			7	건물	함석,판넬	m <sup>2</sup>	12.80							
			8	웬스		m	188.2							
			9	분묘		EA	4.0							
소 계					m <sup>2</sup>	323.4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39호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 인천광역시

1. 행정처분일 : 2018. 11 12.
2. 행정처분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원인	행정처분내용
18	대경해운항공(주)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 이동 ****호 (송도동,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9.25.)	1차 위반-경고
181	(주)애플로지스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 , **동 ****-**호(**호)(청천동,우림라이온스밸리)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8.26.)	1차 위반-경고
368	(주)맥스해운항공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층(용현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7.18.)	1차 위반-경고
456	(주)위니지엘	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세로 **, 동 **호(계산동 하이베라스)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5.7.)	1차 위반-경고
502	(주)오션스코리아 로지스틱스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 *동 ****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아이티센터)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8.30.)	1차 위반-경고
543	하나지엘에스(주)	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 *동 ****호 (신흥동3가, 정광씨펠리스)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4.30.)	1차 위반-경고
568	(주)에스엔피로직스	안**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번길 ** (신흥동3가, 인천항공동물류 내)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7.15.)	1차 위반-경고
574	(주)다정로지스틱	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층(송의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9.27.)	1차 위반-경고
608	나이스산업개발(주)	김**	인천광역시 중구 늘목로**번길 ** (을왕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8.2.15.)	1차 위반-경고
468	(주)성안글로벌	박**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 *동 ***호(신흥동3가, 화인통상)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18.5.30.)	1차 위반-경고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 5. 유의사항

-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 12. 3. 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2차 위반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항만과(032-440-4844)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40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1월 8일

## 인천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주)나노랜드 (나 효 성)	2018. 11. 08.	인천 15001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1(왕길동)	사업 종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544호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 11. 12.

### 인천광역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명칭: 서인천 발전본부 2BL 변압기 주변 방음벽 표지설치공사

#### 3. 면적 및 규모

- 면적: 1,297.83㎡
- 규모: 방음벽 4기(높이 10m, 연장 63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 김병숙
- 주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번지

#### 5. 사업기간

- 2018.6.11. ~ 2018.10.3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8-189호

##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 11. 7.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도로 지정·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2018. 11. 8. ~ 2018. 12. 8.
4. 공고내용

도로위치	지적면적 (㎡)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자 동의
				성 명	
중구 운북동 1289-98번지	11,361.5	6 ~ 29	11,361.5	(주)그로브웨이 외 95인	본인동의

5.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도로지정·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032-453-774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90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8.11.12. ~ 2018.11.26.(15일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18년 12월 17일

##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8년 12월 17일

##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1)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과태료대장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처분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702	배**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송림동)	좌 동	2018.09.04. 15:01	서구 왕길동 원당대로	폭0.26미터(폭2.76미터)	전남98사99**	300,000	반송(폐문부재)	
3	000711	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 (용현동, 대준블루온)	좌 동	2018.09.05. 10:47.	동구 만석동 인중로	총중량4.36톤 초과(총중량44.36톤)	강원80바26**	500,000	반송(폐문부재)	
4	000736	최**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94-14, 101동 501호 (당하동, 홈캐슬)	좌 동	2018.09.13. 09:25.	중구 향동7가 서해대로 209번길	속하중1.50톤 초과(4속하중11.50톤)	인천85바97**	500,000	반송(폐문부재)	
5	000740	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 (작전동, SK오피스텔)	좌 동	2018.09.13. 16:17.	서구 가좌동 건지로	폭0.25미터 초과(폭2.75미터)	인천07마65**	300,000	반송(폐문부재)	
6	000756	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 (부영사랑으로)	좌 동	2018.09.28. 13:30.	강화군 길상면 초지로	길이2.50미터 초과(길이 19.20미터)	경북98아22**	300,000	반송(폐문부재)	
7	000760	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8-10,***** (송현동, 솔빛마을주공2차아파트)	좌 동	2018.09.28. 14:39.	계양구 서운동 봉화로	속하중1.15톤 초과(4속하중11.15톤)	경기06소64**	500,000	반송(폐문부재)	
8	000769	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오로 *** (용현동)	좌 동	2018.10.02. 20:11.	중구 향동 과적검문소	높이0.46미터 초과(높이4.66미터)	인천99아76**	500,000	반송(폐문부재)	
9	000773	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조길 *****	좌 동	2018.10.02. 19:36.	중구 향동 향동과적검문소	속하중2.0톤 초과(5속하중12.0톤)	대구98바33**	800,000	반송(폐문부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94호

## 손실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명 : 유신천주차장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유신천주차장조성공사
- 나. 사업위치 : 서구 가좌동 일원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53m, B=20m
-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장
  - \* 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2. 보상계획

- 가. 보상대상 : “물건조서(토지, 지장물)” 참조
- 나.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다.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라.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8. 11. 12.(월) ~ 2018. 11. 30.(금) (1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4층 보상1팀 (☎ 032-440-524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종합건설본부)

다.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편입토지**

소재지	지 번
서구 가좌동 일원	528, 529, 530-6, 524-13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문 참조” (인터넷 주소 : <a href="http://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a> )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보상1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440-5242)

## 토 지 조 서

[유신천주차장조성공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현행	지적(m <sup>2</sup> )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등기부등본 기재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가좌동	528	<b>528</b>	구	구	685	472	<b>472</b>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2	가좌동	529	<b>529</b>	구	구	8,949	8,602	<b>8,602</b>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3	가좌동	530-5	<b>530-6</b>	장	장	25.1	8.6	<b>8.6</b>	주식회사 *** 안씨	인천 서구 백범로 *** (가좌동)				
4	가좌동	524-4	<b>524-13</b>	장	장	9,327.5	25.2	<b>25.2</b>	**반도체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좌로 **번길 14(가좌동)				
소 계								<b>9,107.8</b>						

# 지 장 물 조 서

[유신천주차장조성공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변경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가좌동	528	528	1EA	W1.2, H=1.9M	1EA	인천광역시					간판1	
2	가좌동	529	529	1EA	-	1EA	한전가스공사					간판2	
3	가좌동	529	529	1EA	-	1EA	한전가스공사					간판3	
4	가좌동	551	551	건물	8621Q932 수출간31	1EA	한국전력					전주1	
5	가좌동	523	523	건물	8621Q932 수출간30	1EA	한국전력					전주2	
6	가좌동	551	551	건물	8621Q932 수출간33	1EA	한국전력					전주3	
7	가좌동	551	551	건물	8621Q932 수출간34	1EA	한국전력					전주4	
8	가좌동	530-5	530-6	담장	L=5,m H=1.5m	7.5㎡	주식회사 *** 앤씨	인천 서구 백범로 *** (가좌동)					담장1

# 이 의 신 청 서

사업명 : 유신천주차장조성공사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계획 열람 통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기타 증빙자료 1부

## << 감정평가업체 추천동의서 >>

□ 사업명 : 유신천주차장조성공사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m <sup>2</sup> )	지분 (0/0)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추천 감정평가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전화)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8-15호

##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중 2년이 지난 대상에 대해 정기심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없기에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8년 11월 07일

###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기간 : 2018. 10. 21 ~ 2020. 10. 20.(2년)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CGV인천논현	이광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6번길 34, 5층~6층	영화상영관	

3. 안전관리 우수업무 내용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우수

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위반 사실 없음

다. 화재발생 사실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훈련 이행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251호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 기간 : 2018년 11월 12일 ~ 2018년 11월 26일(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018년 12월 6일(10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명칭)	백 정 흠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흥초등학교 통학버스 매각(개찰: 2018. 5.23.)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화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전화번호	032-420-8490
	일 시	2018. 12. 7.(금) 10:00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복지재정과 앞 112호 예산협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복지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학생복지담당사무관			
		성 명	원 숙 연, 김 호 섭			

##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 기간 : 2018년 11월 12일 ~ 2018년 11월 26일(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018년 12월 6일(10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명칭)	정 명 국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연평고등학교 불용물품(컴퓨터) 매각(개찰: 2018. 6.20.)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화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전화번호	032-420-8490
	일 시	2018. 12. 7.(금) 13:00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복지재정과 앞 112호 예산협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복지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학생복지담당사무관			
성 명		원 속 연, 김 호 섭				

##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 기간 : 2018년 11월 12일 ~ 2018년 11월 26일(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018년 12월 6일(10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명칭)	삼성 대표 흥광기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천고잔고등학교와 '정수기 임대 유지보수' 계약 2건(대용량정수기, Wee클래스 정수기)을 각각 체결(2018.2.21., 2018.3.12.)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2018.10.25.)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화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전화번호	032-420-8490
	일 시	2018. 12. 7.(금) 15:00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복지재정과 앞 112호 예산협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복지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학생복지담당사무관			
성 명		원 숙 연, 김 호 섭				

## 인천광역시교육감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 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032-420-8490, 김화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b>과징금 부과 신청서</b>		
계 약 명 (입찰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신청 사유				
<p>위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p>				
첨부서류	과징금을 신청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103호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하여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대행사업의 계약, 사업관리, 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정비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 나. 스마트도시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도모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로 변경함.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경제자유구역청)

(2) 연락처 : 전화) 032-453-7462, FAX) 032-453-7469

라.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개정지침(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예규 제 호

##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지침”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대행사업 관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2조 중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3조 중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로 한다.

제7조 중 “유시티”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u></p>	<p><u>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대행사업 관리 지침</u></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 유시티 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유시티 업무 대행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유시티 사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과 같은 법 제19조의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 7. (생략)</p> <p>제4조 ~ 제6조 (생략)</p> <p>제7조(사업관리) ① 대행사업자는 유시티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전평가·설계·시공·시험운영·사후평가 전반에 걸친</p>	<p>제1조(목적) ----- 스마트도시 ----- ----- -----.</p> <p>제2조(적용범위) ----- 스마트도시 ----- ----- ----- -----.</p> <p>제3조(정의)----- -----.</p> <p>1. 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스마트----- ----- -----.</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4조 ~ 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업관리) ① ----- 스마트도시 ----- ----- -----</p>

사업관리계획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전 및 사후평가계획
- 2. 설계관리 계획(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등 설계관리가 필요한 경우)
- 3. 시공관리 계획(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외주관리 등)
- 4. 시험운영 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유시티 사업의 발주, 사전 평가, 시공, 준공검사, 사후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지도·감독한다.

③ (생략)

④ 대행사업자는 유시티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수행내역과 준공검사결과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 ~ 제14조 (생략)

-----  
-----  
-----.

-----  
-----  
-----  
-----

② -----  
----- 스마트도시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스마트도시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계 법령	<p><input type="checkbox"/> <b>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b></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li> <li>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li> </ol> <p><input type="checkbox"/> <b>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b></p> <p>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 .....중략.....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li> </ol> <p><input type="checkbox"/> <b>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b></p> <p>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li> <li>④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li> </ol> <p><input type="checkbox"/> <b>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b></p> <p>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li> </ol>
-------	-------------------------------------------------------------------------------------------------------------------------------------------------------------------------------------------------------------------------------------------------------------------------------------------------------------------------------------------------------------------------------------------------------------------------------------------------------------------------------------------------------------------------------------------------------------------------------------------------------------------------------------------------------------------------------------------------------------------------------------------------------------------------------------------------------------------------------------------------------------------------------------------------------------------------------------------------------------------------------------------------------------------------------------------------------------------------------------------------------------------------------------------------------------------------------------------------------------------------------------------------------------------------------------------------------------------------

관계 법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li> </ol> </li> </ol>
-------	--------------------------------------------------------------------------------------------------------------------------------------------------------------------------------------------------

-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역 내 유시티(U-City) 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 2.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 3. 유비쿼터스 도시정보사업
- 4. 민간 유서비스(U-Service) 개발 및 제공
- 5. 해외 유시티(U-City)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 6. 시설경비업
- 7. 근로자파견업
- 8. 건물(시설)관리용역업
- 9.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적인 사업 일체

제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①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④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비용
  -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특이사항	“해 당 없 음”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10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기회를 확대하고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구성 관련 사항 삭제(안 제4조제2항)

1) 당연직위원 규정 삭제로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기회 확대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인사위원의 대상을 당연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타시·도 사례 : 당연직위원 관련 규정 없음

- 당연직으로 '국장' 직위에 한정되어 있어, 조직개편시 국장의 명칭 변경, 폐지, 신설 등의 경우 규칙 개정사유 발생, 인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 곤란
- 당연직위원 규정으로 변화하는 공직 내부 수요와 조직의 여건 등을 반영하는 인사운영 필요시 적합한 공무원위원 참여 불가
- 당연직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기회 확대
  - \* 개정안 시행시에는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추진
    - ※ 기술직 공무원, 여성 공무원 등 특정 분야 인사 수요 필요시 인사위원 구성(공무원위원)에 반영

## 2) 위촉위원 관련 중복 규정 삭제로 규정 간소화

- 우리 시 인사위원 수는 16~20명으로 이 중 위촉위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 \* (중복성격)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위촉위원 중 시의회 추천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제1항
  - \* (중복규정)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조제2항제2호
- 중복 또는 중복성격의 인사규칙 조항 삭제

※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p>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p> <p>⑤ 위원은 <b>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b>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lt;후 략&gt;</p>	<p>제4조 ②</p> <p>1. 당연직위원</p> <p>가. 인사업무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 경제업무담당국장 및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p> <p>나. 여성업무담당국장 또는 여성업무담당 실·과·소장 중 1명</p>
<p>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p> <p>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lt;중 략&gt; <b>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b>이어야 한다.</p> <p>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p> <p>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p> <p>2. <b>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b>할 것</p>	<p>2. 위촉위원: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상. 이 경우 2명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p>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전화 : 032-440-2515, FAX : 032-440-86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 <u>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u></p> <p>1. <u>당연직위원</u></p> <p style="padding-left: 2em;">가. <u>인사업무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 경제업무담당국장 및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u></p> <p style="padding-left: 2em;">나. <u>여성업무담당국장 또는 여성업무담당 실·과·소장 중 1명</u></p> <p>2. <u>위촉위원: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0명 이상. 이 경우 2명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u></p> <p>③ (생략)</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63호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의4제1항 신설)
-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하도록 규정 (안 제12조의4제2항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6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u></p>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주차장법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 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차량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로 세입의 감소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과장 김영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64호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1. 제안이유

- 「도시개발법」 제14조(조합원 등) 제3항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시 조례의 경우 별표1에서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로 규정하였기에,
- 법령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발구역 안에서의 토지소유자는 평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임원 선임방법을 개정하고자함.  
(제5조 [별표1]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14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라. 본문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법 - 제14조(조합원 등)  <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도시개발법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4. 17.>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 4. 작성자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개발계획과장    윤문상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66호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년 11 월 9 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2018. 1. 17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개정내용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고·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 중 의원이 수수 가능한 금전 등의 가액 범위를 정함. (안 제11조)
- 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함. (안 제14조)
- 다. 동 조례의 ‘별표 1’ 과 ‘별표 2’ 를 삭제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02, 팩스 032-440-8762, 이메일 k4750@korea.kr, 일반우편:(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2018.11.20.까지 도착분에 한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 1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4급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4급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 ⑦ (생략)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금액-----.

② ~ ⑦ (현행과 같음)

## [별표 1]

현행	개정안
<b>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b>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p>비고</p> <p>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p> <p>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p> <p>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p> <p>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p>	삭제

[별표 2]

현 행	개정안										
<p><b>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b></p>											
<p>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p>											
<p>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장관급 이상</td> <td>차관급</td> <td>4급 이상</td> <td>5급 이하</td> </tr> <tr> <td>상한액</td> <td>50만원</td> <td>40만원</td> <td>30만원</td> <td>20만원</td> </tr> </table>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p>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기관장</td> <td>임원</td> <td>그 외 직원</td> </tr> <tr> <td>상한액</td> <td>40만원</td> <td>30만원</td> <td>20만원</td> </tr> </table>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p>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p>											
<p>2. 적용기준</p>											
<p>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p>											
<p>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p>											
<p>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p>											
<p>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p>											
<p>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p>											
<p>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p>											
	삭제										

##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input type="checkbox"/>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특이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8. 1. 17.>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박재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252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규칙제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2018.9.1.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일괄 정비
  - 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안 제12조, 제16조)
    - 행정관리과장 → 노사협력과장
    - 유·초등배치담당사무관 → 학생배치담당사무관
    - 행정관리과 → 노사협력과
  -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 조정(안 제4조제2항, 안 별표1)
    - 정원 : 6,294명 → 6,418명 (124명)

##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 우편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팩스 : 032-420-8456 / 전화번호 : 032-420-6581

라.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 까지 유효함.

## ※ 의견서 제출 양식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적 사항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 붙임1

##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노사협력과장**”으로, “**유·초등배치담당사무관**”을 “**학생배치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관리**”를 “**노사협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제4조제2항 관련)

### 1. 정원 총괄표

(단위: 명)

사 용 기 관	직종 수	정 원	비 고
공립학교	19개 직종	6,280	
교육청(각 부서)	5개 직종	19	
교육지원청	9개 직종	64	
직속기관	9개 직종	55	
합 계		6,418	

### 2. 사용기관별 정원 현황

 공립학교

(단위: 명)

연번	직 종 명	정 원	비 고
1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 구 육성회직원	1,122	
2	특수교육실무원	554	
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42	
4	특수진로코디네이터	9	
5	치료사	2	
6	사서(사서실무원)	162	
7	통학차량실무원	33	
8	유치원교육실무원	364	
9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336	
10	돌봄전담사	539	
11	교육복지사	112	
12	영양사	197	
13	조리실무원	2,653	
14	당직전담직원	3	
15	전문상담사	152	
합 계		6,280	

## □ 교육청(각 부서)

(단위: 명)

번호	부서명	직종명	정원	비고
1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상담사	1	
		전문상담사	13	
2	초등교육과	치료사	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1	
		전문상담사	1	
3	민주시민교육과	전문상담사	1	
4	복지재정과	교육복지사	1	
합 계			19	

## □ 교육지원청

(단위: 명)

직종명	남부교육 지원청	북부교육 지원청	동부교육 지원청	서부교육 지원청	강화교육 지원청	합계
과학실무원	1	1	1	1	1	5
교육복지사	2	2	2	2	1	9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1	1	1	1	1	5
전문상담사	6	6	6	6	1	25
치료사	1	1	1	1	1	5
특수교육실무원	1	1			1	3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	1	2
평생교육사	1	1	1	1	1	5
학부모상담사	1	1	1	1	1	5
합 계	14	14	13	14	9	64

## □ 직속기관

(단위: 명)

기관명	행정 실무원	과학 실무원	전산 실무원	과학관 해설사	공연장 운영 보조요원	영상 실무원	사서 실무원	평생 교육사	향토사	합계
교육과학연구원	1	2		6		1	1			11
교육연수원	1		1							2
학생교육문화회관	12		1		3					16
평생학습관	5							8		13
북구도서관								1		1
중양도서관								1		1
부평도서관								1		1
주안도서관								1		1
화도진도서관								1	1	2
서구도서관								1		1
계양도서관							2	1		3
연수도서관							2	1		3
합계	19	2	2	6	3	1	5	16	1	55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행정관리과장</u>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서기관, 특수교육담당장학관, 학교급식담당사무관, 중등인사담당장학관, <u>유·초등배치담당사무관</u>, 학생복지담당사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노무사로 한다.</p> <p>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행정관리과</u> 고용지원담당사무관이 된다.</p>	<p>제1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노사협력과장</u> ----- ----- ----- <u>학생배치담당사무관</u> ----- ----- -----.</p> <p>제16조(간사) ----- ----- <u>노사협력</u> -----.</p>																																																
<p>[별표 1]</p> <p>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 (제4조제2항 관련)</p> <p>1. 정원 총괄표 (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종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공립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19개 직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6,171</td> <td></td> </tr> <tr> <td>교육청(각 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5개 직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td> </tr> <tr> <td>교육지원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9개 직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53</td> <td></td> </tr> <tr> <td>직속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9개 직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54</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합 계</b></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6,294</b></td> <td></td> </tr> </tbody> </table>	사용기관	직종수	정원	비고	공립학교	19개 직종	6,171		교육청(각 부서)	5개 직종	16		교육지원청	9개 직종	53		직속기관	9개 직종	54		<b>합 계</b>		<b>6,294</b>		<p>[별표 1]</p> <p>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 (제4조제2항 관련)</p> <p>1. 정원 총괄표 (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종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공립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19개 직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6,280</td> <td></td> </tr> <tr> <td>교육청(각 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5개 직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d></td> </tr> <tr> <td>교육지원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9개 직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64</td> <td></td> </tr> <tr> <td>직속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9개 직종</td> <td style="text-align: center;">55</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합 계</b></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6,418</b></td> <td></td> </tr> </tbody> </table>	사용기관	직종수	정원	비고	공립학교	19개 직종	6,280		교육청(각 부서)	5개 직종	19		교육지원청	9개 직종	64		직속기관	9개 직종	55		<b>합 계</b>		<b>6,418</b>	
사용기관	직종수	정원	비고																																														
공립학교	19개 직종	6,171																																															
교육청(각 부서)	5개 직종	16																																															
교육지원청	9개 직종	53																																															
직속기관	9개 직종	54																																															
<b>합 계</b>		<b>6,294</b>																																															
사용기관	직종수	정원	비고																																														
공립학교	19개 직종	6,280																																															
교육청(각 부서)	5개 직종	19																																															
교육지원청	9개 직종	64																																															
직속기관	9개 직종	55																																															
<b>합 계</b>		<b>6,418</b>																																															

현 행

개 정 안

2. 사용기관별 정원 현황

2. 사용기관별 정원 현황

공립학교 (단위: 명)

공립학교 (단위: 명)

연번	직종명	정원	비고
1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 구 육성희 직원	1,063	
2	특수교육실무원	544	
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37	
4	특수진로코디네이터	9	
5	치료사	2	
6	사서(사서실무원)	162	
7	통학차량실무원	36	
8	유치원교육실무원	370	
9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317	
10	돌봄전담사	497	
11	교육복지사	110	
12	영양사	221	
13	조리실무원	2,653	
14	당직전담직원	3	
15	전문상담사	147	
합 계		6,171	

연번	직종명	정원	비고
1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 구 육성희 직원	1,122	
2	특수교육실무원	554	
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42	
4	특수진로코디네이터	9	
5	치료사	2	
6	사서(사서실무원)	162	
7	통학차량실무원	33	
8	유치원교육실무원	364	
9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336	
10	돌봄전담사	539	
11	교육복지사	112	
12	영양사	197	
13	조리실무원	2,653	
14	당직전담직원	3	
15	전문상담사	152	
합 계		6,280	

교육청(각 부서) (단위: 명)

교육청(각 부서) (단위: 명)

번호	부서명	직종명	정원	비고
1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상담사	1	
2	초등교육과	치료사	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1	
		전문상담사	1	
3	학교생활교육과	전문상담사	12	
합 계			16	

번호	부서명	직종명	정원	비고
1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상담사	1	
		전문상담사	13	
2	초등교육과	치료사	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1	
		전문상담사	1	
		전문상담사	1	
3	민주시민교육과	전문상담사	1	
4	복지재정과	교육복지사	1	
합 계			19	

현행							개정안						
□ 교육지원청 (단위: 명)							□ 교육지원청 (단위: 명)						
직종명	남부교육 지원청	북부교육 지원청	동부교육 지원청	서부교육 지원청	강화교육 지원청	합계	직종명	남부교육 지원청	북부교육 지원청	동부교육 지원청	서부교육 지원청	강화교육 지원청	합계
과학실무원	1	1	1	1	1	5	과학실무원	1	1	1	1	1	5
교육복지사	2	2	2	2	1	9	교육복지사	2	2	2	2	1	9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1	1	1	1	1	5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1	1	1	1	1	5
전문상담사	3	3	3	3	2	14	전문상담사	6	6	6	6	1	25
치료사	1	1	1	1	1	5	치료사	1	1	1	1	1	5
특수교육실무원	1	1				3	특수교육실무원	1	1				3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	1	2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	1	2
평생교육사	1	1	1	1	1	5	평생교육사	1	1	1	1	1	5
학부모상담사	1	1	1	1	1	5	학부모상담사	1	1	1	1	1	5
<b>합계</b>	<b>11</b>	<b>11</b>	<b>10</b>	<b>11</b>	<b>10</b>	<b>53</b>	<b>합계</b>	<b>14</b>	<b>14</b>	<b>13</b>	<b>14</b>	<b>9</b>	<b>64</b>

□ 직속기관 (단위: 명)

기관명	행정 실무원	과학 실무원	전산 실무원	과학관 해설사	공연장 운영 보조원	영상 실무원	사서 실무원	평생 교육사	향토사	합계
교육과학연구원	1	2		6		1				10
교육연수원	1		1							2
학생교육문화관	12		1		3					16
평생학습관	5						8			13
북구도서관							1			1
중앙도서관							1			1
부평도서관							1			1
주안도서관							1			1
화도진도서관							1	1		2
서구도서관							1			1
계양도서관						2	1			3
연수도서관						2	1			3
<b>합계</b>	<b>19</b>	<b>2</b>	<b>2</b>	<b>6</b>	<b>3</b>	<b>1</b>	<b>4</b>	<b>16</b>	<b>1</b>	<b>54</b>

□ 직속기관 (단위: 명)

기관명	행정 실무원	과학 실무원	전산 실무원	과학관 해설사	공연장 운영 보조원	영상 실무원	사서 실무원	평생 교육사	향토사	합계
교육과학연구원	1	2		6		1	1			11
교육연수원	1		1							2
학생교육문화관	12		1		3					16
평생학습관	5						8			13
북구도서관							1			1
중앙도서관							1			1
부평도서관							1			1
주안도서관							1			1
화도진도서관							1	1		2
서구도서관							1			1
계양도서관							2	1		3
연수도서관							2	1		3
<b>합계</b>	<b>19</b>	<b>2</b>	<b>2</b>	<b>6</b>	<b>3</b>	<b>1</b>	<b>5</b>	<b>16</b>	<b>1</b>	<b>55</b>

**붙임3****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총괄부서"란 근로자의 인사·노무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정·현원, 배치, 업무,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교육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용기관"이란 당해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 등을 직접 지휘·관리하는 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며,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2장 정원

제4조(정원관리)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원 책정과 관련한 사업계획

2.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인력

3. 근로자 직무분석 결과 등

② 사용기관별·직종별 정원의 총수는 별표 1과 같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사용기관 중 공립학교는 직종별로 정원 총수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장애인고용추진사업에 의한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의 사업주 의무고용률 범위 내에서 사용기관과 직종의 구분 없이 통합하여 추가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제5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량과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 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와 교육청 예산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정원책정 승인)**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정원책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비치)**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원책정 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인사

**제8조(채용)**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2의 근로자 채용 직종과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근로자 정원에 해당하는 직종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시적 업무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2.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대체 기간제근로자

②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총괄부서의 채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2. 별표 2의 근로자 채용 직종 중 별표 1의 정원 외 3개월 초과외 근로자

③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체인력 및 업무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채용정보 등을 활용한 장애인근로자

④ 채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순환전보가 필요한 경우
2. 기구개편,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② 전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제10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근로자 배치기준과 인원 조정 등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인력배치사업에 대한 소요인원, 근로조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인력관리에 필요하다고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서기관, 특수교육담당장학관, 학교급식담당사무관, 중등인사담당장학관, **학생**배치담당사무관, 학생복지담당사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노무사로 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5장 기타

제17조(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1.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관내 전보
2.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통합인건비 관리
3.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관리

② 교육감은 사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1.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을 제외한 직종의 근로자 채용
2. 소속 근로자의 휴직, 복직, 퇴직, 해고, 징계 등
3. 소속 근로자의 보수지급,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4. 소속 근로자의 결원 등으로 인한 대체 근로자의 채용 등
5.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제18조(취업규칙) 교육감은 근로자의 복무,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원  
(제4조제2항 관련)

## 1. 정원 총괄표

(단위: 명)

사용기관	직종수	정원	비고
공립학교	19개 직종	6,280	
교육청(각 부서)	5개 직종	19	
교육지원청	9개 직종	64	
직속기관	9개 직종	55	
합 계		6,418	

## 2. 사용기관별 정원 현황

 공립학교

(단위: 명)

연번	직종명	정원	비고
1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행정실무원, 구 육성회 직원	1,122	
2	특수교육실무원	554	
3	특수학급종일제강사	42	
4	특수진로코디네이터	9	
5	치료사	2	
6	사서(사서실무원)	162	
7	통학차량실무원	33	
8	유치원교육실무원	364	
9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336	
10	돌봄전담사	539	
11	교육복지사	112	
12	영양사	197	
13	조리실무원	2,653	
14	당직전담직원	3	
15	전문상담사	152	
	합 계	6,280	

## □ 교육청(각 부서)

(단위: 명)

번호	부서명	직종명	정원	비고
1	학교생활교육과	학부모상담사	1	
		전문상담사	13	
2	초등교육과	치료사	1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1	
		전문상담사	1	
3	민주시민교육과	전문상담사	1	
4	복지재정과	교육복지사	1	
합 계			19	

## □ 교육지원청

(단위: 명)

직종명	남부교육	북부교육	동부교육	서부교육	강화교육	합계
	지원청	지원청	지원청	지원청	지원청	
과학실무원	1	1	1	1	1	5
교육복지사	2	2	2	2	1	9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1	1	1	1	1	5
전문상담사	6	6	6	6	1	25
치료사	1	1	1	1	1	5
특수교육실무원	1	1			1	3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	1	2
평생교육사	1	1	1	1	1	5
학부모상담사	1	1	1	1	1	5
합 계	14	14	13	14	9	64

□ 직속기관

(단위: 명)

기관명	행정 실무원	과학 실무원	전산 실무원	과학관 해설사	공연장 운영 보조원 요원	영상 실무원	사서 실무원	평생 교육사	향토사	합계
교육과학연구원	1	2		6		1	1			11
교육연수원	1		1							2
학생교육문화 회관	12		1		3					16
평생학습관	5							8		13
북구도서관								1		1
증양도서관								1		1
부평도서관								1		1
주안도서관								1		1
화도진도서관								1	1	2
서구도서관								1		1
계양도서관							2	1		3
연수도서관							2	1		3
<b>합 계</b>	19	2	2	6	3	1	5	16	1	55

## [별표 2]

##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직종(제8조 관련)

연번	직종명	연번	직종명
1	공연장운영보조요원	20	운전원
2	과학관해설사	21	원어민코디네이터
3	과학실무원	22	유치원교육실무원
4	교무행정실무원	23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5	교육복지사	24	장애교사보조인력
6	구 육성회직원	25	전문상담사
7	급식배식원	26	전산실무원
8	기업회계직원	27	조리실무원
9	당직전담직원	28	청소원
10	도서관연장운영인력	29	취업지원관
11	돌봄전담사	30	치료사
12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31	통학차량실무원
13	사감	32	특수교육실무원
14	사서(사서실무원)	33	특수진로코디네이터
15	시설관리실무원	34	특수학급종일제강사
16	영상실무원	35	평생교육사
17	영양사	36	학부모상담사
18	영어센터부장	37	향토사
19	운동부지도자	38	행정실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253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 인천광역시교육감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016.5.29.)에 따라 교육규칙에 필요한 사항 반영
  - 개인과외교습자를 교습비 등 내부 게시·표시 의무자와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자에 추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령에 규정된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음

- 행정처분 기준 정비
  - 일부 위반사항 세분화
  - 누락된 행정처분 기준 설정

## 2. 주요내용

- 개인과외교습자를 교습비 등 내부 게시·표시 의무자와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자에 추가 (안 제19조의2 및 20조 일부개정)
- 각종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교육감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안 제30조제1항 신설)
- [별표 6] 행정처분 기준 조문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위반사항별 점표의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 세분화 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별로 분리하고 미비한 기준 정리
  - 개인과외교습자의 시정명령을 별점으로 정하고, 과외교습 중지 명령시 1년 이내의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되어 별점표에 반영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게시·표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별점표에 반영
  - 개인과외교습자의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부착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별점표에 반영
  -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별점표에 반영
  -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별점표에 반영(등록말소, 폐지, 과외교습중지 1년)

###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FAX

\* 전자우편 : nosomi@korea.kr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팩스 : 032-420-8317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5. 개정규칙안 : “붙임2”



(붙임 2)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평생교육체육과)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1호 중 “학원·교습소”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장소”로, “위치”를 “위치(단,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제20조 중 “교습자는 등록증(인가증), 교습소신고필증”을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등록증(인가증),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습정지, 등록말소”를 “교습정지(중지), 등록말소(폐지)”로 한다.

제30조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6]

## 행정처분 기준 (인천광역시)

별 점	1~30 (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행정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2. 같은 위반사항 반복 회수는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행정처분일 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위반사항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4.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1년”으로 한다.
5.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위 반 사 항 별 점 표

1. 학원

구분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및 정 도		반복회수별점수		
				1차	2차	3차
시설	시설 무단변경	학원의 시설규모(조례 별표 1~4)미달		15	30	45
		조례 제2조의2(1~3)관련 단위 시설기준 면적 미달		15	30	45
		기타 시설 변경		10	20	30
	위치 무단변경	타건물로 위치 변경		30	60	등록 말소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20	40	60
학원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 징수	적정 교습비등 초과비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 50% 미만	12	24	36
			30% 미만	4	8	12
	교습비등 미등록			9	18	27
	교습비등 표시 위반 (전단지, 인터넷 광고 포함)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하여야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거짓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등	영수증 미발급 방법 및 정도	미발급, 허위 및 과목 통합 발급 등	10	20	30
			부실 기재	5	10	15
	교습비 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등록 말소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무자격 강사 또는 미검증 외국인강사 채용		15	30	45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채용, 미배치		5	10	15	
	강사등 채용 및 해임 미통보		5	10	15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표	강사 등 게시표 미게시 및 허위게시	6	12	18	

구분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및 정 도	반복회수별점수			
			1차	2차	3차	
교습 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15	30	45	
	원칙 세부 교습 과정 운영 위반	과목추가 운영	3	6	9	
	교습시간 무단 연 장 운영	1시간 이상	15	30	45	
1시간 미만		10	20	30		
운영	등록증 미게시		6	12	18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독 서 실 남녀혼석		5	10	15	
	허위증명 발급		15	30	45	
	기타 학원 불법 운영	고의·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경미한 사항		10	20	30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기준미달		9	18	2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학생체벌 등)	고의·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경미한 사항		10	20	30
	허위·과대광고			15	30	45
	명칭사용 위반	명칭표기 위반		6	12	18
	정원(또는 일시 수용인원) 초과	초과정도	50% 이상	10	20	30
			50% 미만	5	10	15
	환경불량	불량정도	조례 제2조의2(4~6) 관련 시설환경 기준미달	6	12	18
			기타	2	4	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3	6	9
			부살기재	1	2	3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15	30	45
급식실 운영 사고			30	60	등록 말소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 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 말소			

구분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및 정 도		반복회수별점수		
				1차	2차	3차
운영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거부 및 방해정도	강박행위	30	60	등록 말소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30	60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미이행	정지명령 미이행	정지 2월	등록 말소	
			경고조치 미이행	9	18	27
	게시된 행정 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전부제거)	15	30	45
			기타(일부제거)	10	20	30
기타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10	15	20	
	아동학대 행위	법제17조제1항제12호 아동학대 행위	등록 말소			

1. 채용대상은 학원-강사, 독서실-생활지도담당인력, 숙박시설학원-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으로 한다.
2. 연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2. 교습소

구분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및 정 도	반복회수별점수			
			1차	2차	3차	
시설	시설 무단변경	기타 시설 변경	10	20	30	
	위치 무단변경	타건물로 위치 변경	30	60	폐지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20	40	60	
교습자	교습자 무단변경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 징수	적정 교습비등 초과비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 50% 미만	12	24	36
			30% 미만	4	8	12
	교습비등 미등록		9	18	27	
	교습비등 표시 위반 (전단지, 인터넷 광고 포함)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하여야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거짓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등	영수증 미발급 방법 및 정도	미발급, 허위 및 과목 통합 발급 등	10	20	30
			부실 기재	5	10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폐지			
교습소 보조요원	교 습 소 강사채용	강사 채용(보조요원 교습행위 포함)	30	60	폐지	
		임시 교습자 운영 미통보	6	12	18	
교습 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15	30	45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1시간 이상	15	30	45	
		1시간 미만	10	20	30	

구분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및 정 도	반복회수별점수			
			1차	2차	3차	
운영	신고증명서 미게시		6	12	18	
	기타 교습소 불법 운영	고의·중과실	30	60	폐지	
		경미한 사항	10	20	30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기준미달	9	18	2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b>학생체벌</b> 등)	고의·중과실	30	60	폐지	
		경미한 사항	10	20	30	
	허위·과대광고		15	30	45	
	명칭사용 위반	명칭표기 위반		6	12	18
	정원(또는 일시 수용인원) 초과	초과정도	50% 이상	10	20	30
			50% 미만	5	10	15
	환경불량	불량정도	조례 제2조의2(4~6) 관련 시설환경 기준미달	6	12	18
			기타	2	4	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3	6	9
			부실기재	1	2	3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거부 및 방해정도	강박행위	30	60	폐지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30	60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미이행	정지명령 미이행	정지 2월	폐지	
			경고조치 미이행	9	18	27
	게시된 행정 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전부제거)	15	30	45
기타(일부제거)			10	20	30	
기타	교습자 연수 불참	교습자 연수 불참	10	15	20	
	아동학대 행위	법제17조제2항제6호 아동학대 행위	폐지			

1. 연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

구분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및 정 도	반복회수별점수		
			1차	2차	3차
신고	허위·기타 부정신고	허위·기타 부정신고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강사	강사 채용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채용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교습과정	신고외 교습과목 운영	교습과목 임의변경	30	60	중지 1년
	교습시간 무단 연 장 운 영	1시간 이상	15	30	45
		1시간 미만	10	20	30
시설	위치 무단 변경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20	40	60
교습비 등	교습비등 표시 위반 (전단지, 인터넷 광고 포함)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하여야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 여야 할 광고중 한곳이라도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거짓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미신고		9	18	27
	초과징수	초과징수	30	60	중지 1년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중지 1년
	조정명령불이행	조정명령불이행	30	60	중지 1년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운영	신고증명서 게시, 제시 위반	신고증명서 미게시, 미제시	10	20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강박행위	30	60	중지 1년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30	60	중지 1년

구분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및 정 도	반복회수별점수			
			1차	2차	3차	
운영	행정처분 미이행	중지명령 미이행	정지 2월	중지 1년	중지 1년	
		경고조치 미이행	9	18	27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10	20	30	
	기타 불법운영	고의, 중과실	30	60	중지 1년	
		경미한 사항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학생체벌 등)	고의·중과실	30	60	중지 1년	
		경미한 사항	10	20	30	
	허위·과대광고		15	30	45	
	기타	아동학대 행위	법제17조제3항제6호 아동학대 행위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현행	개정안
<p>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lt;신설&gt;</p> <p>(생략)</p>	<p>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학원설 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 습자를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교 육감에게 부여한 과태료의 부과·징 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b>행정처분 기준</b>										[별표 6] <b>행정처분 기준</b>									
별점 (점)	1~30 (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별점 (점)	1~30 (점)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행정 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행정 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b>※ 행정처분 적용기준</b>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2. 같은 위반사항 반복 회수는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행정처분일 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위반사항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4. 독서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준 중 “교습정지”라 함은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5. (신설)										<b>※ 행정처분 적용기준</b>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의교습자의 경우 “과의교습중지”를 의미한다. 5.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의교습자의 경우 “과의교습 중지1년”으로 한다.									

현행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시설	시설 무단변경	학원의 시설규모(조례 별표 1.2)미달	15	30	45	
		단위 시설기준 면적 미달	9	18	27	
		기타 시설 변경	3	6	9	
	위치 무단변경	타건물로 위치 변경	15	30	45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10	20	30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자 무단변경		10	20	30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 징수	적정교습비등 초과비용	50% 이상	20	40	60
			30% 이상~50% 미만	12	24	36
			30% 미만	4	8	12
			교습비등 미등록		9	18
	교습비등 표시·게시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허위표시·허위게시(전단지, 인터넷 광고포함)	15	30	45
	교습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 미표시·미게시·미고지		15	30	4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등	영수증 미발급 방법 및 정도	미발급, 허위 및 과목통합 발급 등	10	20	30
			부실 기재 (비치)	2	4	6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또는 미검증 외국인강사 채용		15	30	45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채용, 미배치		5	10	15		
강사등 채용 및 해임 미통보		5	10	15		
강사 인적사항 게시표		강사 게시표 미게시 및 허위게시	6	12	18	
교습소 강사채용		강사 채용(보조요원 교습행위 포함)		30	60	등록 말소
	임시 교습자 운영 미통보		6	12	18	

개정안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 학원					
시설	시설 무단변경	학원의 시설규모(조례 별표 1~4)미달	15	30	45
		조례 제2조의2(1~3)관련 단위 시설기준 면적 미달	15	30	45
		기타 시설 변경	10	20	30
	위치 무단변경	타건물로 위치 변경	30	60	등록 말소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20	40	60
학원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20	40	60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 징수	적정교습비등 초과비용	50% 이상	20	40
30% 이상 ~ 50% 미만			12	24	36
30% 미만			4	8	12
교습비등 미등록			9	18	27
교습비등	교습비등 표시 위반 (전단지, 인터넷 광고 포함)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거짓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거짓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등	영수증 미발급 방법 및 정도	미발급, 허위 및 과목통합 발급 등	10	20
부실 기재			5	10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등록 말소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무자격 강사 또는 미검증 외국인강사 채용		15	30	45
	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 미채용, 미배치		5	10	15
	강사등 채용 및 해임 미통보		5	10	15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표	강사 등 게시표 미게시 및 허위게시	6	12	18

현행						개정안						
위반 사항 벌점표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교습 과정	등록(신고)의 교습과정 운영		15	30	45	교습 과정	등록 의 교습과정 운영		15	30	45	
	원칙 세부 교습 과정 운영 위반	과목추가 운영	3	6	9		원칙 세부 교습 과정 운영 위반	과목추가 운영	3	6	9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1시간 이상	15	30			45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1시간 이상	15	30
	1시간 미만		3	6	9		1시간 미만	10		20	30	
운영	1. 등록증 미게시		6	12	18	등록증 미게시		6	12	18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개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독서실 남녀혼석		5	10	15	독서실 남녀혼석		5	10	15		
	허위증명 발급		15	30	45	허위증명 발급		15	30	45		
	기타 학원 불법 운영	중대	정지 2월	등록 말소		기타 학원 불법 운영	고의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보통	15	30	45		경미한 사항	10	20	30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기준미달	9	18	27		기준미달	9	18	2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중대	정지 2월	등록 말소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학생체벌 등)	고의중과실	30	60	등록 말소		
		보통	9	18	27		경미한 사항	10	20	30		
		학생 체벌	10	20	30							
	허위과대광고		15	30	45	허위과대광고		15	30	45		
	명칭사용 위반	명칭표기 위반		6	12	18	명칭사용 위반	명칭표기 위반		6	12	18
	정원(또는 일시 수용인원) 초과	초과정도	50% 이상	10	20	30	정원(또는 일시 수용인원) 초과	초과정도	50% 이상	10	20	30
50% 미만			5	10	15	50% 미만			5	10	15	
환경불량	불량정도	조례 제2조의2 관련 시설환경 기준미달	6	12	18	환경불량	불량정도	조례 제2조의2 (4~6)관련 시설환경 기준미달	6	12	18	
		기타	2	4	6			기타	2	4	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3	6	9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3	6	9	
		부실기재	1	2	3			부실기재	1	2	3	

현행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개인과의교습자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15	30	45	
	급식실 운영 사고		30	60	등록 말소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 말소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거부 및 방해정도	강박행위	30	60	등록 말소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30	60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미이행	정지명령 미이행	정지 2월		등록 말소
			경고조치 미이행	9	18	27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	10	20	30
			기타	6	12	18
	허위·기타 부정신고		중지			
	개인과의교습자 강사 채용		중지			
	교습과목 임의변경		시정 명령	중지		
	교습장소 변경미신고		시정 명령	중지		
	허위과대광고		시정 명령	중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시정 명령	중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 명령	중지		
조정명령불이행			시정 명령	중지		
영수증 미교부			시정 명령	-		
신고증명서 미제시		시정 명령	-			
기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 등 연수 불참	6	12	18		
1. 채용대상은 학원-강사, 독서실-생활지도담당인력, 숙박시설학원-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으로 한다.						

개정안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개인과의교습자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15	30	45	
	급식실 운영 사고		30	60	등록 말소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 말소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거부 및 방해정도	강박행위	30	60	등록 말소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30	60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미이행	정지명령 미이행	정지 2월		등록 말소
			경고조치 미이행	9	18	27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전부제거)	15	30	45
			기타(일부제거)	10	20	30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10	15	20	
	기타	아동학대 행위	법제17조제1항제12호 아동학대 행위	등록 말소		
	1. 채용대상은 학원-강사, 독서실-생활지도담당인력, 숙박시설학원-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으로 한다. 2. 연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b>2. 교습소</b>					
	시설	시설 무단변경	기타 시설 변경	10	20	30
		위치 무단변경	타건물로 위치 변경	30	60	폐지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20	40	60
교습자	교습자 무단변경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등록액 초과 징수	적정 교습비등 초과 비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 50% 미만	12	24	36
			30% 미만	4	8	12
		교습비등 미등록	9	18	27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거짓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0	20	30	
		전단지, 인터넷				

현 행				개 정 안											
위반 사항 벌점표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광고 포함)						5	10	15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거짓 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미게시 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0	20	30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 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 락한 경우)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등						영수증 미발급 방법 및 정도		10	20	30		
									부 실 기 재		5	10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패지					
			교습소 보조요 원						강사 채용(보조요원 교습행위 포함)		30	60	패지		
									임시 교습자 운영 미통보		6	12	18		
			신고 외 교습과목 운영						15	30	45				
			교습 과정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15	30	45		
									1시간 미만		10	20	30		
			신고증명서 미게시						6	12	18				
			기타 교습소 불법 운영						고의중과실		30	60	패지		
									경미한 사항		10	20	30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기준미달		9	18	2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안전사 고, 도난, 풍기문란, 학생체벌 등)						고의중과실		30	60	패지		
									경미한 사항		10	20	30		
			허위,과대광고						15	30	45				
			명칭사용 위반						명칭표기 위반		6	12	18		
			정원(또는 일시 수용인원) 초과						초과정도		50% 이상		10	20	30
											50% 미만		5	10	15
			환경불량						불량정도		조례 제2조의2(4~6)관련 시설환경 기준미달		6	12	18
											기타		2	4	6

현행				개정안								
위반 사항 벌점표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부실기재	3 1	6 2	9 3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거부 및 방해정도	강박행위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30 30	60 60	폐지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행정처분 미이행	정지명령 미이행 경고조치 미이행	정지 2월 9	폐지 18	
							게시된 행정 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전부제거) 기타(일부제거)	15 10	30 20	45 30
							교습자 연수 불참	교습자 연수 불참		10	15	20
							가타 아동학대 행위	법제17조제2항제6호 아동학대 행위		폐지		
1. 연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b>3. 개인과의교습자</b>												
							신고	허위기타 부정신고	허위기타 부정신고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강사	강사 채용	개인과의교습자 강사 채용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교습과정	신고외 교습과목 운영	교습과목 임의변경	30	60	중지 1년
								교습시간 무단 연장 운영	1시간 이상 1시간 미만	15 10	30 20	45 30
							시설	위치 무단 변경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표시 위반 (전단지, 인터넷 광고 포함)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 거짓표시(표시하여야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광고시 교습비등 부분표시(표시하여야 할 광고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10 5	20 10	30 15
								교습비등 게시 위반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거짓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미게시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부분게시(게시하여야 할 장소 중 한곳이라도 일부내용을 누락한 경우)	10 5	20 10	30 15
									교습비등 미신고	9	18	27

현행				개정안							
위반 사항 벌점표				위반 사항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초과점수	초과점수	30	60	중지 1년
							교습비등 미반환	교습비등 미반환	30	60	중지 1년
							조정명령불이행	조정명령불이행	30	60	중지 1년
							영수증 미교부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신고증명서 게시, 게시 위반	신고증명서 미게시, 미제시	10	20	30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강박행위	30	60	중지 1년
								출입기피, 방해 및 서류제출 거부	30	60	중지 1년
							행정처분 미이행	중지명령 미이행	정지 2월	중지 1년	중지 1년
								경고조치 미이행	9	18	27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개인과의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10	20	30
							기타 불법운영	고의, 중과실	30	60	중지 1년
								경미한 사항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사항(안전사 고, 도난, 풍기문란, 학생체벌 등)	고의,중과실	30	60	중지 1년
								경미한 사항	10	20	30
							허위,과대광고		15	30	45
						기타	아동학대 행위	법제17조제3항제6호 아동학대 행위	중지 1년	중지 1년	중지 1년

군 · 구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8-13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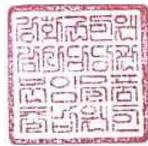
## 공인 신조 공고

강화군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7.

## 강 화 군 수

## ○ 신조 공인

구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신조사유	사용일	비고
신조	강화군민원감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조직개편	2018.11.7.	
신조	강화군민원감사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조직개편	2018.11.7.	

## 기 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 제2018-1호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규정」 제10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반입수수료 단가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시행일	비고
생활폐기물	62,076	2019.7.1	※사업장배출시설계(기타) 신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배출시설계로 분류되는 일부 폐기물에 대한 항목 신설
	70,056	2020.7.1	
사업장생활계(자가)	102,167	2019.1.1	
하수준설토	47,880	2019.7.1	
	59,882	2020.7.1	
상.하수오니	47,941	2019.7.1	
	60,036	2020.7.1	
고형화오니	122,559	2019.7.1	
	136,800	2020.7.1	
중간처리잔재처리물	99,893	2019.7.1	
사업장배출계(기타)*	102,167	2019.1.1	
오니류 등 4종	83,358	2019.1.1	
광재 등 17종	83,358	2019.1.1	
생활소각재	62,076	2019.7.1	
	70,056	2020.7.1	
건설폐기물	99,893	2019.7.1	